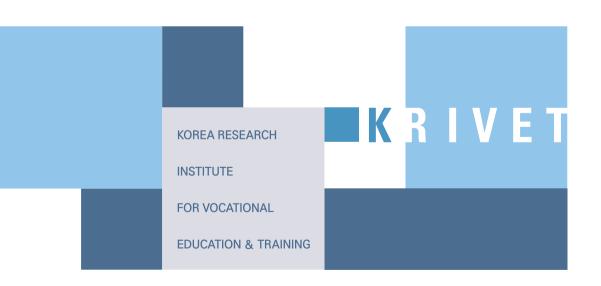


#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복지 지원 방안 연구

남재욱·김봄이·신나래





### 머 리 말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은 단지 경제적 자원을 획득한다는 의미를 넘어, 가해자와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폭력적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은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으로서 생계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지원을(제7조의5), 보호시설의업무로서 입소자에 대한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제8조).

본 보고서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해 현재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자립지원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자립지원은 직업훈련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직업훈련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이나 복지 측면의 다양한 지원이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고려하여 직업훈련뿐 아니라 관련된 고용및 복지 서비스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지난6개월간 직업훈련,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경제적 측면의 자립을 중심으로 문헌 및 통계자료 검토, 보호시설 설문조사, 보호시설 입소자, 퇴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FGI를 수행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남재욱 박사가 연구 책임을 맡았으며, 김봄이 박사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 전문위원인 신나래 박사는 외부 공동연구자로 참여해 주었다. 그 밖에도 많은 외부 전문가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들이 설문과 FGI 진행을 지원해 주었고, 자문의 형태로 연구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본 과제의 주제설정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자료 확보에 도움을 주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보고서의 제1장은 남재욱 박사가 작업하였고, 제2장은 신나래 박사가, 제3장은 김봄이 박사가 집필하였다. 제4장을 위한 FGI 진행과 자료 분석에는 연구진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남재욱 박사가 집필하였다. 제5장의 정책 제안은 연구진 전체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남재욱 박사가 정리하였다. 황효진 연구조원은 연구를 위한 자료 정리와 편집에 참여하여 지원하였다. 보고서의 출판에 이르기까지 노력해 준 연구진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 보고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9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 영 선

#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	요성 및 목적3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7
제2장 가정폭력피해자	와 경제적 자립_11
제1절 가정폭력이	] 관한 맥락적 이해13
제2절 가정폭력이	] 대한 이론적 검토 20
제3절 가정폭력피	]해자의 경제적 자립 문제 ····· 24
제3장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제도 현황 분석_35
제1절 한국의 가	정폭력피해자 현황37
제2절 가정폭력피	]해자 자립지원제도 현황42
제3절 가정폭력피	해자 자립지원제도의 문제점64
제4장 가정폭력피해자	경제적 자립 실태 분석_71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130
제5장 가정폭력피해자	경제적 자립지원 개선 방안_135
제1절 가정폭력피	]해자 자립지원 방향 ······ 137

제2절	가정	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138
제3적	햣호	연구과제						160

#### SUMMARY\_161

#### 참고문헌\_169

#### 부록 177

<부록 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대상 설문 내용 ....... 179 <부록 2-1>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입소자 및 퇴소자) · 183 <부록 2-2>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종사자) ...... 187 <부록 3> FGI 반구조화 질문지 ...... 191

본 저작물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9년도에 작성하여 제공한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복지 지원 방안 연구'(남재욱)이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누리집(www.krivet.re.kr)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표 차례

<표 2-1>「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폭력의 유형 및 예시 17
<표 3-1> 2016년 가정폭력(부부폭력) 실태조사 결과 38
<표 3-2> 가정폭력 발생률 변화 추이
<표 3-3> 가정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40
<표 3-4>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직업별 현황41
<표 3-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추진 연혁43
<표 3-6>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제도47
<표 3-7>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현황50
<표 3-8>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현황(2017년) 52
<표 3-9>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실적53
<표 3-10>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실시 현황54
<표 3-11>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주요 훈련직종55
<표 3-12> 조사대상기관의 일반 현황 156
<표 3-13> 조사대상기관의 일반 현황 256
<표 3-14> 직업훈련 프로그램 상위 10개 57
<표 3-15>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방식 58
<표 3-16> 취업알선 프로그램 미운영 사유59
<표 3-17> 퇴소 후 거주지원 내용60
<표 3-18> 2019년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프' 공고 ······ 62

<丑	4-1>	FGI 참여자 기본정보(입소자) 74
<丑	4-2>	FGI 참여자 기본정보(퇴소자) 75
<丑	4-3>	FGI 참여자 기본정보(종사자) 76
<丑	4-4>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환경적 맥락 130
<丑	4-5>	가정폭력피해자의 환경적 맥락과 자립지원제도의
		부정합132
<丑	5-1>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정책 제언137

## 그림 차례

[그림	3-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추진	! 체계 … 49
[그림	3-2]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사업 지원 현황(2016년)	63

## 요 약

본 연구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지원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제1항 제4호).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생계비·직업훈련비·자립지원금 등의 보호비용 지원(제7조의5), 자립자활교육 및 취업정보 등 시설의업무를 명시하고 있다(제8조).

그러나 현재의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이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입소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또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지원에도 보호조치(신변안전을 위함)와 경제활동 간의 충돌, 양육과 경제활동병행의 어려움, 직업교육의 질과 종류의 한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궁극적으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해자로부터의 단기적인 피난뿐 아니라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보호시설의 지원이 미흡한 것이다.

이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이들의 욕구에 맞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현재「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이 직업훈련에 있으므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한 장·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훈련 자체만으로 완전한 경제적 자립을 기대할 수는 없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효과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직업훈련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훈련과 연계된 주변 정책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선과제와 함께 이를 둘러싼 제반 고용·복지 정책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경제적 자립지원이 실질적인 자립으로이어지도록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제적 자립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6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그중 60개 기관의 설문지를 취합하였다. 또한 보호시설 입소자 및 퇴소자, 시설 종사자 28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진행하였다. FGI는 집단 유형별로 총 3팀으로 구성하여 서울, 대구·경 북지역에서 각각 한 번씩 진행하였다(총 6번). 2~7명으로 이루어진 각팀은 서로 다른 시설의 참여자로 구성하여 특정 시설의 특성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0개 기관의 설문을 통해 '2018년 자립지원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중 57개 기관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요 프로그램은 정보기술자격, 음식조리, 요양보 호사, 커피 바리스타, 운전면허, 네일·피부·미용, 산모·신생아·아동돌봄 등으로 대부분이 저숙련 서비스 업종이었다. 직업훈련을 운영하지 않은 3개 기관 중 2개 기관은 미운영 사유를 작성하지 않았고, 1개 기관은 미운영 사유로 '재원 부족'을 들었다.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한 50개 기관의 취업연계 방식(중복응답가능)에는 '비공식적 친분이나 모임을 통한 알선(33개)', '공식적 취업알선 기관을 통한 서비스 연계(32개)', '기타(8개)'가 있었다. 나머지 10개 기관 중 운영 여부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2개 기관을 제외한 8개기관의 미운영 사유로 '기타'에 6개 기관이 응답하였고, '재원이 부족해서', '마땅히 연계할 프로그램이 부족해서'에 각각 1개 기관이 응답하였으며, 미응답 기관도 1곳 있었다. '기타'의 사유로는 자립보다는 피해자들의 치료·회복이 우선이어서, 노출로 인한 위험부담 때문에, 입소자 개개인이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아르바이트 활동을 해서, 4대보험 미가입을 원해 적극적인 알선이 어려워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매뉴얼이 없어서 등이 제시되었다.

44개 기관에서는 퇴소 후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방식은 '기타 주거 관련 지원 (32개)', '(임대주택 외) 거주지 알선(22개)', '임대주택 입주(19개)' 순이었다. '기타 주거 관련 지원'에는 자립정착금 및 보증금 지원, 타 쉼터 연계, 공동생활가정 연계 등이 포함된다. 32개 기관에서는 퇴소자 모임, 후원자 연계, 자조모임, 입소자-퇴소자만남,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법률지원, 후원품 나눔, 성인예술치료등의 퇴소 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예산 확대와 신변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양육과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정책욕구 파악을 위해 28명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퇴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FGI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환경적 맥락

주제	범주	하위범주
	직업훈련의	회복의 수단
거 게 기 - 기 기 이 이	의미	경제적 자립의 기회
경제적 자립지원의 의미와 욕구	-5) (A) (A)	회복의 수단
774 71	취업의 의미	(궁극적인) 경제적 자립의 기회
	7.1	긴급한 경제적 필요 해소
		중고령 여성
	기정폭력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우선성
	피해자의	경제적 자원의 박탈
	상황적 특수성	가해자의 추적 위험
그리도 꾸구 네그 시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
가정폭력피해자의 화경적 맥락		비공개 시설
<b>1</b> 704 44		열악한 생활환경과 시설의 획일성
	시설의 특성과	자원의 부족
	제약요인	공공-민간 협업의 어려움
		지역적·기관별 차이의 발생
		보호기간의 제약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은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며,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의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취업은 긴급한 경제적 필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대부분은 중고령 여성으로 노동시장의 약자이면서 자녀돌봄의 책임을 가진 경우가 많다. 입소 시점에 이들은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상태이며, 경제적으로는 본인의 원래 능력과 무관하게 자원을 박탈당한 경우가 많다. 또한 가해자의 추적 위험 속에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위축되어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이런 피해자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시설이지만 생활환경은 열악하고 피해 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지원에 의지하는 민간 시설로 자원이 부족하고, 이마저 지역적으로 상당한 편차가 있다. 피해자의 입소기간이 정해져 있어 입·퇴소 과정에서 서비스의 분절이나타날 우려도 있다.

현재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제도에는 피해자와 시설의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자원이 없는' 피해자와 '자원이 부족한' 시설이라는 특성상 직업훈련과취업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가해자의 추적이 두려운' 피해자와 '안전을 고려한 비공개' 시설이라는 특성상 노동시장 프로그램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덧붙여 '중고령 여성' 피해자와 '자원이 부족한민간시설'이라는 기관의 특성은 취업이나 훈련지원의 비체계성 문제로이어지며, '사회적 위축'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사회적 자립'을 위한중간단계를 필요로 한다.

〈표 2〉가정폭력피해자의 환경적 맥락과 자립지원제도의 부정합

단계	부정합	
	취업과 직업훈련의 경합	
	예산제약	
이 시 즈 카이	안전상의 고려	
입소 중 지원	취업/훈련지원의 비체계성	
	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 선택지의 제한	
	사회적 자립을 위한 중간단계	
비 > 중 리키	주거지원 제한	
퇴소 후 자립	지원의 연속성	

가정폭력피해자들의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의 개선방향은 이 같은

부정합의 해결에서 출발해야 한다. FGI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불만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보다는 직업훈련을 둘러싼 맥락들, 즉 직업훈련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과 직업훈련 참여 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공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주로 지적되었다. 직업훈련 자체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직업훈련의 의미가취업으로 연결되는 수단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 정서적·사회적 자립의 과정으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직업훈련에 이르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보니 프로그램 차체에 대한욕구는 잠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표 3〉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정책 제언

구분	정책 제언			
->>	공공기관 이용 및 공공서비스 제공 시 전산관리번호 활용 확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취업 및	자산조사 기준 변경			
훈련참여 저해요인 제거	돌봄지원 개선			
사해표면 제기	공동작업장 지원			
	훈련수당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및 고용 연계 과정 체계화			
	정보제공 확대			
취업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종류 확대			
프로그램 개선	훈련지원 체계 개선			
	온라인 프로그램 활용 인프라 마련			
	시설 생활환경 개선 및 다양성 확보			
보호시설 및	보호시설 종사자			
행정 인프라	보호시설-공공기관 간 협조체계 개선			
개선	경제적 자립지원 평가기준 조정			
	민간 영역 관련 기관의 인식개선			
장기적	장기적 커리어 관리체계 마련			
자립지원	주거지원과 자립지원금			

이와 같은 여건을 반영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과제를 '취업 및 훈련참여 저해요인 제거',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선', '보호시설 및 행정 인프라 개선', '장기적 자립지원' 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취업 및 훈련참여 저해요인 제거' 측면에서 취업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전산등록번호를 활용하고, 사회보험 가입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프로세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관의 예산부족문제, 직업훈련 프로그램 선택 및 취업연계의 비체계성 문제, 생활비조달 때문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단기 취업하는 문제등을 풀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된다.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산 조사를 전제로 하는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가구 구성원과 경제적 동반자가 아닌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로, 일반적인 가구단위 자산조사가이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자산조사는 이들의 실질적인 자원 동원 능력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다수는 자녀돌봄의 책임을 안고 있다. 따라서 돌봄(양육) 지원을 개선하여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전일제 보육 시설 이용 시 우선순위 보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시설에서의 공동작업장 운영은, 자기효능감 회복을 통한 정서적 자립 및 일정한 소득을 통한 시급한 경제적 상황 해소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권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면 훈련비용 외에 교통비·식대·교재비 등의 활동비용이 들고, 훈련참여 기간에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훈련장려금, 취업촉 진수당, 참여수당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중·장기적 으로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훈련수당을 광범위하게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직업훈련 및 취업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조치로는 직업훈련 및 고용 연계 과정 체계화, 정보제공 확대, 직업훈련 프로그램 종류 확대, 훈련지원 체계 개선, 온라인 프로그램 활용 인프라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직업훈련 및 고용연계 과정은 시설 종사자들의 노력에 의존해 전문적·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기존의 고용 인프라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 설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 관련 기관 종사자 들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시설에서 고용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제공되면 개인별로 정보획득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기존 입소/퇴소자들의 경로를 따라가게 되어 주로 저숙련 서비스업 일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단위로 가정폭력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고용·훈련·주거 관련 제도나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수강하는 대부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저숙련 서비스업에 국한되고 있다. 이는 기관의 정보 부족, 프로그램 선택의 비체계성, 노동시장의 제약 등과 같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직업능력개발의 성격이 낮은 검 정고시, 평생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직업훈련 참여는 치료와 회복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직업 관련성이 다소 낮더라도 평생 교육 프로그램 참여나 검정고시 준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훈련지원 비용 문제는 내일배움카드제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기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하며,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처럼 가정폭력피해자의 훈련참여 시 자부담을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을 통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비밀유지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그리고 훈련시설과의 거리가 먼 지방 시설에서 긴요하므로, 시설 내 PC 및 인프라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보호시설 및 행정 인프라 개선' 측면에서는 시설 생활환경 개선 및 다양성 확보, 보호시설 종사자, 보호시설-공공기관 간 협조체계 개선, 경제적 자립지원 평가기준 조정, 민간 영역 관련 기관의 인식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부부폭력피해자인 기혼여성의 공동생활'에 맞춰진 획일적 형태이다. 앞으로는 연령, 가정폭력의 특성, 가해자의 추적 정도를 고려하여 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하며, 공개·비공개 여부 역시 유형에 따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시설로 연계할 수 있는 상담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는 프로그램 운영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고, 객관적 처우를 넘어서는 '헌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종사자 처우 개선은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나아가 경제적 자립지원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적해야 할 부분은 '당번' 제도이다. 다른 시설과 달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입소자들이 당번을 정하여 청소 및 식사 등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이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자들은 회복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며, 직업훈련이나 취업 등 경제적 자립 활동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민간기관이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공공기관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가정폭력피해자는 신변보호가 필요하고, 경제적 자원 활용에 제약이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은 비공개 시설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협조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내용이나 신변보호 등을 위한 조치사항, 시설과의 협조 프로세스 관한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제시함으로써협조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취업률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는 취업 외에도 정서적·사회적 회복의 통로가 된다. 따라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평가할 때에는 이용자의 만족도나 자존감 향상과 같은 정성적인 평가에 상당한 비중을 두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환경에는 직업훈련기관이나 사업주, 병원 등 민간 영역의 행위자들도 많은데, 이들의 경우 공공기관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이나 법적 보호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이는 결국 가정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피해자의 안전 확보나 제출 가능·불가능 서류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계도하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퇴소 후까지 이어지는 '장기적 자립지원'의 맥락에서는 장기적 커리어 관리체계 마련과 주거지원과 자립지원금 확대라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이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생존할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갖는 것이라고 볼 때 이들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소초기에 이들의 연령, 희망, 적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훈련 및 일자리에 대한 개인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입소기간은 물론 퇴소 이후까지 관리하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이루어져야 한다.

퇴소 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는 주거와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 지원을 가장 우려한다. 주거지원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더라도 퇴소 후 기본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일정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당수는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정작 퇴소 시점에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많다.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가정폭력피해자도 적용 가능하도록 특례를 삽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올해 도입된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 제도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궁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예산 수준은 시설당 연간 1~2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sup>제1장</sup> ▮ 서 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이때 '가정구성원'의 범위에는 배우자, 본인혹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혹은 적모(嫡母)와 서자(庶子) 관계에 있는 혹은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된다(법 제2조제2호). 요컨대 가정폭력은 부부폭력, 아동폭력, 노인폭력 등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을 포괄하고 있는 넓은 개념이라고 하겠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이 부부폭력이다. 부부폭력에는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과함께 배우자에 대한 통제(방임) 역시 넓은 의미의 폭력으로 정의된다.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배우자 10명 중 4명이 지난 1년간 넓은 의미의 부부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다(이인선 외, 2017). 과거보다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부부폭력의 피해자가 모두 여성은 아니지만, 남성 가해 - 여성 피해 비중이 반대의 경우보다 더 높을뿐더러 여성 가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쌍방폭력의 경우 남성이 먼저 가해한 경우가 많고, 신체적 상처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이때문에 부부폭력은 젠더폭력의 한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젠더 간에 불균형하게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부부폭력이 나타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즉, 성차별적이며 남성중심적인 사회를 배경으로 권력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이 부부폭력의 피해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있어서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앞서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시됨에 따라 정작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는 것 역시 불균 등한 젠더 권력관계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폭력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 권력의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음을 매우 잘 드러내는 영역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 특히 경제적자립의 문제이다. 가정폭력의 특수성 중 하나는 폭력이 반복적이라는점에 있는데, 반복적 폭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지못하는 원인으로 제기되는 것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혼인관계 혹은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경제적 독립의 현실적 어려움이다(양현아, 2006; 김주현, 2008; 박언주, 2010; 신나래, 2017). 반대로 가해남성이피해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수단 중 하나가 여성의 취업과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력을 매개로 한다는점 역시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보여준다(Moe & Bell, 2004; Rothman & Corso, 2008; 이희연·박태

정, 2010). 많은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열위에 놓이게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역할 분업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결국 경제적 자립의 문제는 불균등한 젠더 권력관계의반영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지원 문제를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은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보호비용으로서 생계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지원을(제7조의5),보호시설의 업무로서 입소자에 대한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제8조).

그러나 현재의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에는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우선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이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또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도 예산 부족 및제도상 미비 등의 이유로 신변안전을 위한 보호조치와 경제활동 간의충돌, 양육과 경제활동의 병행에 있어서의 어려움, 직업교육의 질과종류의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궁극적으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호시설이 가해자로부터의 단기적인 피난뿐 아니라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을 점검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가정폭력피해자의 욕구에 맞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있 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경제적 자립지원 중에서도 직업훈련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 고자 한다. 이는 현재「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피해자 시설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이 직업훈련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직업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 장·단 기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가정폭력피 해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여성은 전업주부의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있어(여성가족부. 2017a) 이들이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 서는 직업능력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가정 폭력피해여성의 직업훈련 경험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 이나 사회적 관계 확장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 또한 갖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신나래 박언주, 2018),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에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도 직업훈련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직업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에 이르는 것은 직업훈련 프로그램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효과성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과제이 지만, 이들의 직업훈련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훈련을 둘러싼 주변 정책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자체의 개선에 국한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둘러싼 제반 고용·복지 정책의 문제를 포괄 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및 관련 경제적 자립지원이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내용 및 구성

본 연구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내용과 방법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로서,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고,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제도 현황을 분석한다. 우선 기존연구들과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제 도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기존 자립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 한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현황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에 반영하 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이 현재의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아울러 직업훈련뿐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가 직업훈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고용 및 복지 정책, 그리고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의 걸림돌이 되는 정책적, 제도적 제약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이전까지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정책과제는 가정폭력피해자가 경제적 자립지원에 나서지 못하는 요인의 해소, 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 자체의 개선, 보호시설 및 행정적 인프 라의 개선, 그리고 장기적 자립지원을 위한 과제로 나누어 제시한다.

#### 2. 연구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기존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보호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가정폭력피해자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다.

현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 보호시설에 제공하는 직업훈련 및 기타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 현황은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실적'을 통해 제시되는 전체 시설의 지원건수 정도가 유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상세한 시설별 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66개 보호시설에 대한 자료 요청 형식의 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과 관련된 애로사항, 개선과제, 정책욕구에 대한 보호시설의 견해에 대해서도 파악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의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그에 대한 평가 및 애로사항, 그리고 이들의 정책욕구 파악을 위해 보호시설

<sup>1)</sup> 실제 응답은 60개 기관에서만 이루어졌다.

입소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을 시도 중인 가정폭력피해자, 그리고 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지에 기초한 FGI를 수행 하였다. 아울러 기관 규모별,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과 영남 지역 복수의 시설에서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각 집단별 10명씩 모두 30명을 대상으로 FGI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보호시설 종사자들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모집, 면접수행, 수집된 자료 분석 단계에서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시설 활동가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사전 설명하고,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을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연구자는 면접 수행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에 대해 다시 직접 설명하였으며, 언제든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원칙 등 연구 참여자의 권한을 숙지한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접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 제2장

# 가정폭력피해자와 경제적 자립

제1절 가정폭력에 관한 맥락적 이해 제2절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3절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 문제

### 제<sup>2장</sup> ▶ 가정폭력피해자와 경제적 자립

#### 제1절 가정폭력에 관한 맥락적 이해

#### 1.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가정폭력처벌법」) 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설명한다. 여기에서 가정구성원이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관계나 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한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가정 폭력은 특히 배우자 간에 발생하는 폭력, 그중에서도 남성배우자가 여성배우자에게 행하는 폭력을 의미하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개인 간에 발생하는 폭력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으로 다루어져야 한다(Gracia & Herrero, 2006).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한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유배우자 남녀를 대상으로 배우자로부터 발생한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가해와 피해를 조사한 결과. 여성이 보고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은 12.1%. 남성이 경험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은 8.6%로 나타났다. 남녀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폭력의 유형에 따른 세부적 분석이 필요하다. 남성은 여성배우자로부터의 정서적 폭력을 가장 빈 번하게 경험한 것으로 응답한 반면(7.7%), 여성은 신체적·경제적·성적 폭력을 포함한 모든 유형에서 남성보다 높은 빈도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남성이 응답하는 폭력피해 중 일부는 남성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방어가 쌍방폭력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추후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되다. 실태조사에서는 남편이 먼저 폭력 행동을 시작했다가 48.4%. 아내가 먼저 시작했다가 15.8%로 나타났 으며, 남성의 6.3%가 신체적 상처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여성의 20.0%가 신체적 상처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부부폭력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는 '성격차이'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적 관계 안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위협·공포심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 2.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부모 혹은 자녀에 대한 폭력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이야기하며 아동·자녀 학대, 부모·노인 학대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날 가정폭력의 의미는 친밀한 관계, 즉 부부나 커플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억압, 통제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젠더를 바탕으로 여성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권력을 가진 가해자가 그렇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이는 많은 경우 성차별적 사회분위기 내에서 젠더를 바탕으로 발생한다. 이는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친밀한 관계에 서의 폭력(IPV: Intimate Partner Violence), 여성에 대한 폭력(VAW: Violence Against Women), 배우자폭력(spousal violence), 아내학대 (wife abuse), 매 맞는 아내(battered wife, wife beating), 매 맞는 여성 (battered woman) 등의 용어로 설명되기도 한다(Anderson, 1997; Dobash & Dobash. 1979: Straus & Gelles. 1990: Tauchen & Witte. 1995: 김은영·윤민우·박선영, 2013; 신나래, 2017).

가정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심리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으로 설명 된다.2) 신체적 폭력이 가장 가시적이며 대표적으로 때리기,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해하기 등이 있고, 목 조르기 혹은 머리채 잡기도 신체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Straus & Gelles, 1990; Tauchen & Witte, 1995). 의식주와 관련된 행동을 통제하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도 신체적 위해로 작용한다.

심리적 정서적 폭력으로는 욕설과 폭언, 비난과 무시하기 등이 있다 (Tauchen & Witte, 1995; 신나래, 2017). 피해자가 아끼는 물건을 일 부러 부수거나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애완동물 혹은 자녀를 괴롭히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주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거짓소 문을 내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좋은 배우 자로 연기하는 행위, 피해자가 도망가는 경우 다른 사람들을 해치겠다고

<sup>2)</sup> 가정폭력의 유형은 여성가족부가 수행한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사용된 분류와 「가정폭 럭처벌법 에서 제시된 유형과 예시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위협하는 행위 등은 심리적 폭력이다.

성적 폭력은 가해자가 여성의 재생산을 강요, 혹은 통제하거나 성을 수단으로 여성을 학대하는 것으로 가정폭력의 맥락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원치 않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임신과 출산을 강요 혹은 방해하는 행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신나래·박언주, 2018; Moore, Frohwirth & Miller, 2010).

경제적 폭력으로는 피해자에게 노동을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출퇴근 혹은 업무를 방해, 피해자의 월급과 자산을 가로채는 행위가 있다 (박언주·김효정, 2015; 서경남, 2017; 신나래, 2017). 피해자의 사소한 지출까지 통제하며 씀씀이를 비난하거나 생활비 사용에 대한 의심과 통제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을 억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생활비를 탕진하거나 피해자에게 빚 떠넘기기, 신용 도용하기 등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폭력행위이다. 또한 가해자는 시장에서의 임금노동과 가정에서의 돌봄노동을 외면하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억압과 통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여성의 일상을 통제하려는 시도로서 피해여성이 친정식구나 친구 등과 교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근거 없이 행동을 의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박언주·김효정, 2015; 신나래, 2017). 다음의 <표 2-1>은 「가정폭력처벌법」에 제시된 가정폭력의 유형 및 예시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유형들은 개별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동시에 발행하는 특성을 가진다(김은영 외, 2013). 가정폭력의 여러 유형들은 상호 배타적이기보다 중복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은 복수의 폭력 유형을 경험하곤 한다.

또한 가족의 구조와 의미,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정폭력의 유형 또한 변화하고 있으므로 가시적인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억압과 통제에 대해서도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고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가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심리적 폭력과 일상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심각한 폭력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표 2-1〉「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폭력의 유형 및 예시

유형	예시
신체적 폭력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 르는 행위
정서적 학대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경제적 위협	가정구성원(노인)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 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 없는 금전 사용 금지 행위
성적 폭력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자신의 성기나 이 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그 밖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방임	기니를 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 csmSeg=685&ccfNo=1&cciNo=1&cnpClsNo=1, 최종검색일: 2019. 9. 10.

#### 3. 가정폭력의 특성과 2차 피해의 발생

가정폭력은 가부장적인 가족과 사회적 배경에서 더욱 빈번하고 심각하게 나타난다.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제도와 사회분위기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게 만들며 여성의 폭력피해 사실을 비가시화시킨다.

이렇듯 친밀한 관계에서 권력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모르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무차별적 폭력이나 지인 동료들 사이에서 의 일반폭력과는 구분되는 몇 가지 특성들, 즉 반복성, 계획성, 의도성 등을 가지고 있다. 일반폭력과 달리 가정폭력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며, 이는 일회성에 그치기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다. 가정폭력은 어쩌다 한 번 발생한 실수라기보다 권력의 차이에 의한 지속적 억압과 통제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홍정현 외(2017)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진행 과정을 '더 자주 더 강하게'로 묘사하며 가정폭력의 반복성과 가중성을 강조하였다. 즉, 의도적이고 치료적·전 문적인 개입 없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세지는 가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족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되며 폭력의 은폐성 때문에 목격자 확보의 어려움을 가진다. 물론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입증이 어려웠던 과거보다 오늘날은 사진, 동영 상, 녹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피해의 입증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다. 가·피해자가 가족관계 혹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특수성을 바탕 으로 가·피해자 분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폭력행위에 대한 가해자 옹호와 피해자 비난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정폭력이 발생하여도 피해 자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신고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게 신고에 성공하 더라도 피해자는 가족을 신고했다는 꼬리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은 정서적·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 하기도 하며, 자녀들에게 폭력이 대물림되거나 가정폭력의 맥락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가정폭력은 절차상의 차이로 「형법」상의 상해나 폭행죄 등으로 다루 어지기보다(「형법」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되어 폭력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는 가정폭력이 일반 폭력에 비해 반복적이며 높은 강도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여성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거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 가정을 유지 하는 것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가정폭력의 맥락에서는 종종 2차 피해가 발생한다. 2차 피해란 성 폭력피해자에게서 발생하며, 주변인과 사회체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의미하는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3호에서는 2차 피 해를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해행위, 직장에서 발생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및 부당한 인사 조치, 경제적 불이익의 발생 등도 2차 피해에 포함된다.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확장 적용되었다. 가정폭력피해여성 또한 탈폭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Laing(2017)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63%가 2차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보고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의료적·법적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족이나 주변인 혹은 전문가 집단에게 폭력피해 사실을 밝힌다. 하지만 피해자는 폭력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폭력피해 사실이 무시되거나 외면당하고 의심을 받거나 불신을 사기도 한다.

가해자나 가족 등의 주변인이 사건에 대해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거나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내는 행위, 피해자의 평소 행실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피해자의 상황과 의사에 상관없이 집요하게 질문하는 행위,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용서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대표적인 2차 피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사건을 왜곡하거나 폭력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자 유발론, 피해자 비난(victim-blame)이 발생한다. 이는 가·피해자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법적·의료적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적 주체로부터 발생되기도 한다. 피해여성이 탈폭력의 과정에서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을 시도할 때 가해자와 주변인, 그리고 법과 제도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 제2절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검토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적 시도는 시대 흐름에 따라 관점의 차이를 가져온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개인의 내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가해자의 공격성, 낮은 자존감 혹은 병리적인 성격특질의 문제에서 폭력의 원인을 찾으려 했다면, 최근에는 보다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젠더에 기반하여 다른 사회적·경제적 흐름과 함께 가정폭력을 설명하려 시도한다.

#### 1. 여성주의적 관점

여성주의적 관점은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을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여성에게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을, 남성에게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강요하는 사회적·구조적 분위기에서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폭력을 남성다움 혹은 있을 수 있는 일로 미화하는 사회분위기에서는 가정폭력이 암묵적으로 용인되곤 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남성과 여성이 가진 권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며, 남성권력이 여성에게 가정과 사회에서 억압과 통제를 행사하는 것이다. 여성주의이론은 가정폭력을 가부장제 사회가 갖는 사회구조의 특성에서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개인적 맥락보다 사회구조와 여성억압의맥락에서 설명한다.

Straus와 Gelles(1990)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묵인, 결혼에서의 남성 지배 모두 가부장제적 규범의 반영이다. 여성을 낮게 평가하고 폭력을 남성의 자원으로 인정하는 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권력 배분의 결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발생은 성차별적 가족과 사회구조, 성차별적 노동시장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Denzin(1984)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닌 성, 권력, 빈곤, 노동 등의 사회구조적 요인들과 결합된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희연·박태정(2010)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가정과 사회에서

권력과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데,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은 특히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폭력으로 인한 결혼해체가 발생할 경우, 피해여성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사회 전반에서 불리를 겪게 된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가정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발생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가부장제 문화와 제도적 틀을 개편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가해자의 변화를 위한 상담과 치료,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력한 처벌 수위 적용 등이 필요하다.

#### 2.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은 폭력의 발생과 재생산을 설명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된다. Bandura(1973)는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함을 설명하며, 폭력 또한 학습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타인의 폭력행위에 노출되어 이를 관찰·모방하며 폭력행위를 습득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수록 이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지며, 행위자가 의미 있는 타자일수록 모방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사회학습이론은 폭력의 세대 간 전이 현상에 대해 설명한다. 의미 있는 타자들로 구성되어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가족은 폭력행위를 습득하는 하나의 장으로 작용한다. 가족 내 의미 있는 타자들 간에 폭력이 하나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폭력을 갈등에 대한 대처양식으로 학습할 가능성을 높인다. 즉, 어린 시절 부모 간 폭력에 노출되었거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 이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폭력적 관계로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린 시절 폭력에 노출된 경험 유무에따라 성인의 가·피해자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도 제기된다. 어린 시절 폭력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내적 힘과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이를 극복하곤 하는데, 이들을 미래의 잠재적 가·피해자로미리 규정짓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 3. 학습된 무기력 이론

Hiroto와 Seligman(1975)은 반응과 행동-결과 사이의 무관성(non-contingency)으로 인해 무기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으로 설명하였다. 부정적인 결과나 고통스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함으로써 더 이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학습된 무기력 이론은 가정폭력의 맥락에 적용되며, 피해여성이 자신의 행동이 다가올 고통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믿음을 가지고 변화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는 상태를 설명한다. 가정폭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폭력관계에서 벗어나려는 혹은 폭력을 중단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실패로 끝나는 경험들이 지속되어 피해여성은 탈폭력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폭력적인 관계에 머무르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 폭력관계에서 떠나지 못하는 피해여성들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여성을 무기력한 존재로 규정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된다. 학습된 무기력은 변화가 불가능한 상황 자체보다 그것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 상황보다 주관적 해석이 문제라고 간주된다(홍정현 외, 2017).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부정적 자기암시의 작용이라는 해석은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비난으로 작용할 수있다. 또한 부정적인 결과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부 대상자들을 통해 긍정심리학의 발전이시작되어, 무기력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피해여성 개인에게 또다시폭력피해에 대해 되묻게 된다. 그 안에서도 힘을 가지고 폭력에 대처하는 여성의 생존성과 저항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이 제시되며, 학습된무기력 이론을 이용하여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여성의 주체성과 가시성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제3절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 문제

#### 1. 자립의 의미

공미혜(2017: 237)는 자립을 "자기충족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미국에 거주 중인 가정폭력피해 한인 한부모 빈곤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혜숙(2013: 253)은 자활을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한 개인으로서, 부모로서'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정신적 자립능력을 모두 갖추어 가는 삶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립은 개인이 경제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동원할

수 있으며, 정서적·사회적으로도 독립적으로 결정·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 자립이 의미하는 바는 비피해 여성이 생각하는 맥락과 다를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여성들에게 자립 이란 탈폭력과 자립이 달성된 상태뿐만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회복하고 자립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주거공간에 입주 중인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한 공미혜(2017)의 연구에서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는 의식의 전환, 성평등 의식 달성 등은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의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쉼터에서의 여성주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은주(2009)는 자립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자립 및 자립의지, 자립 요인, 자립욕구라는 주제로 분류하였다. 자립 및 자립의지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 공식적·사회적 지지 및 지원이 보호 요인으로, 자립기능과 자본, 자립의욕의 결여, 사회적 지원망과 관심의 부족, 대인관계 능력의 결여, 역기능적 가족관계 등이 저해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자립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피해여성이 취업한 경우, 초혼인 경우, 남편이 무직이어서 혼인 당시 가족 부양 경험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자녀학대로 자녀와 동반해 쉼터 입소한 경우, 그리고 쉼터에 머문 기간이 길수록, 학력수준이 높고 이혼의지가 강할 수록 자립의 성공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었다(류은주, 2009). 자립욕구와 관련해서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취업훈련과 취업 관련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 시까지 쉼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실제 취업알선으로 연결되는 현실적인 직업교육을 개별적 특성에 맞춰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은주, 2009).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들을 자립의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주거불안, 자립지원 제도 및 시스템의 지원 미비, 사회적 고립, 정서적 불안 등의 낮은 자립의지, 자녀돌봄 지원의 부재 등은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류은주, 2009; 김은영 외, 2013; 신나래, 2017; Kaukinen, 2004). 이에 반해 재정적 지원, 폭력으로부터 안전의확보, 자녀돌봄 지원, 역량강화 지원, 실질적 직업훈련과 퇴소자들의 궁정적인 자립 모델링,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지지 등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류은주, 2009; 정혜숙, 2013). 또한 주거안정성,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는 경제적 자립의 기틀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피해여성의 자립의지를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하므로,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주거공간의 확보는 여성에게 생의 전환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공미혜, 2017).

#### 2.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제적 자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신나래, 2017). 경제적 자립은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비피해여성,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이 직면 하는 사회적 요구이기도 하다. 가정폭력피해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이란 '경제적인 부족에서 벗어나는 것,' '가해자와 완전한 분리 후에

그들과 상관없이 온전히 독립된 한 인격체로서 육체, 정진, 사회적 안녕을 이룬 상태,'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 등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서경남, 2019).

경제적 지위는 가족관계에서의 권력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립과 배우자 관계는 단선적이기보다 역동적이고 다면적으로 형성된다(Anderson, 1997). 경제적 자립은 임금향상을 통한소득효과, 정서적 안정, 노동자로서의 성장, 사회적 관계망 확장 등의 궁정적 효과를 제공한다. 피해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은 이를 넘어 직장생활을 통한 일시적 안전의 제공, 가해자와의 권력관계 재편, 탈폭력을 위한 기회와 가능성 제공 등 궁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소득, 자산등 경제적 자원은 개인의 자존감, 성 정체감, 나아가 배우자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Anderson, 1997).

김소정(2018)은 빈곤을 임금소득, 자산과 같은 경제적인 자원의 결핍 뿐만 아니라 양질의 고용지위나 직업환경의 상실, 신체적·정서적 건강 상태의 악화와 같은 인적자본의 결핍까지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자원들의 결핍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작용한다. 가정폭력은 특정 인구 사회학적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피해 여성이 빈곤/저소득을 경험하고 있을수록 탈폭력의 기회 자체가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1,933명의 응답을 분석한 김소정 (2018)에 따르면 아내학대 피해 경험을 보고한 25%의 여성들은 아내학대 경험이 직업만족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응답하였다. 가정폭력은 피해여성의 사회적·경제적·인적 자원을 훼손,

여성을 빈곤화시키며 탈폭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탈폭력의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는 내용들은 주거불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의 자료에 따르면, 보호시설 거주여성들이 퇴소 이후에 가장 시급하다고생각한 지원은 주거지원, 생계비 지원과 저리 대출 등의 경제적 지원,취업알선 순으로 나타났다. 공미혜(2017)에 따르면, 일시 보호시설을거쳐 주거지원사업의 주거공간에 입주한 여성들 또한 생계유지와 자기개발의 문제에 당면해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과 직업훈련,취업연계가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은 양부모가족에게도 쉽지 않은 과업인데, 많은 수의 피해여성들은 보호시설 퇴소 이후에 한부모가족, 그중에서도 빈곤·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형태로 살아가며 이를 수행해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유자녀 피해여성은 탈폭력의 과정을 겪는 특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피해여성의 연령과 생애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소숙희·최승아(2019)의 연구에 따르면, 보호시설 퇴소자의 약 90%가 유자녀 여성이었으며, 40대 미만이 절반가량이고 자녀돌봄집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나타났다. 보호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피해여성들은 자녀돌봄노동에대한 부담 때문에 노동시장 진입에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신나래, 2017). 저학력·저소득, 어린 동반자녀, 취업경력 부족 등의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는 양질의 보육자원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결혼 전 당당한 노동자의 삶을 살아왔던 피해여성은 결혼제도 안으로 들어와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남성배우자에게 1차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권력관계 안에서 그러한 의존적 관계는

강화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피해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모습만을 보인 것은 아니다. 결혼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남편을 대신하여 가족경제를 책임지던 여성도 다수보고되고 있다(신나래, 2017).

#### 3.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이론적 접근

가정폭력의 원인을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가부장적 문화에서 설명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 및 경제적 불균형은 가정폭력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Gracia & Herrero, 2006). 성차별적 사회분위기, 사회가 기대하는 성역할 차이가 사회에서의 성별 분리를 바탕으로 가족에서의 성차별적 구조와 관계를 야기하며,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젠더폭력에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에따라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권한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면 가정폭력에도불구하고 피해여성은 가해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경제적인 의존관계 때문에 피해여성의 탈폭력은 더욱 어려워진다(김은영 외, 2013; 신나래, 2017). 또한 가정폭력 비피해 여성들에게는 경제적 자원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나 피해여성들에게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자원이론(resource theory)에 따르면, 가계부양자가 되는 것은 가족 관계 내에서 권력을 쟁취하도록 돕는 기제이므로 가해남성이 생계부양이라는 자원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무너진 전통적 남성성을 다시 쟁취하기 위한, 이를 대체하는 자원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관계에서의우위를 점하려 시도한다(Basile, et al., 2013; Villarreal, 2007; 신나래·

이영수, 2017). 임금과 가계부양은 남성성을 상징하는데, 여성의 노동과 임금소득은 이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남성은 이러한 위협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다(Dobash & Dobash, 1979). 문화적 규범에 따라 자원의 의미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여성배우자에게 임금상승이 의미하는 바 또한 문화계층에 따라 달리 작용하는 것이다. 신나래·이영수(2017)에 따르면, 여성의 취업 여부 또는 근로소득의 수준 그자체보다 부부 사이에 상대적으로 누가 더 소득이 많은지, 즉 근로소득 비중이 가정폭력피해 경험에 대해 더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남성배우자의 경우, 여성배우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자신이 담당해야 하는 돌봄·가사 노동의 부담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는 취업여성, 전문직·고소득 여성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시사하며, 여성의 경제적 지위 상승이 가부장적인 시대적·사회적·가족적 배경에서는 여성을 오히려 가정폭력에 더욱 노출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자원이론 바탕의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서도 가정 폭력의 발생을 부부간의 힘의 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설명한다(Goode, 1971; Gibson-Davis et al., 2005). 가족은 직업, 교육, 소득수준 등에 따라 권력이 작용하는 장이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력지위가 낮은 남성배우자는 폭력 행사를 통해 다른 차원의 권력을 획득하려 한다는 것이다(Goode, 1971). 여기에서의 자원은 물리적 자산과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직업안정성, 가족 내 의사결정 능력, 개인의 매력도, 성생활 능력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원 소유에 따라 부부간의 권력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다(조혜선, 2003). 더 나아가 부부간의 경제력 그 자체보다 경제력의 차이가 더 큰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는 상대적 자원이론(relative resource theory)과 상통하는 맥락으로 자원의 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차이가 중요하며, 소득은 물리적 의미뿐만 아니라 관계를 결정하는 상징적 의미로 작용하는 것이다(Anderson. 1997: Macmillan & Gartner, 1999).

이와는 달리 결혼의존이론(marital dependency theory)에 따르면 저 임금의 여성은 남성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종속되며 결혼 자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가정폭력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거나, 가정 폭력의 발생 시 탈폭력의 어려움 또한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Dobash & Dobash, 1979; Kalmuss & Straus, 1990; Tauchen & Witte, 1995; Kaukinen, 2004). 여성이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수록 폭력의 발생 시 선택의 기회들은 증가한다.

가부장제 맥락에서 생계부양은 남성이, 가족 내 돌봄과 가사노동은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성별 분업화되었고, 완전고용이 가능하던 시장구조에서 이러한 일인 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은 지속 가능했었다. 이러한 전통적 시장 가족 구조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으며, 여성은 남성배우자와 결혼 자체에 종속되기 쉽다. 또한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며 신체적·경제적으로 취약해짂과 동시에 어린 자녀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된다. 어린 자녀의 양육과 병행 가능한 시장노동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부담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방해한다.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부관계에 반영되는데, 성별 분리된 노동 시장에서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은 그만큼 남성배우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Kaukinen, 2004). Kaukinen(2004)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낮고, 직업이 없거나,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의 경우에 결혼 자체에 더 의존하게 된다. 여성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가사와 돌봄노동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여성이 결혼에 더욱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부부간의 사회적 지위가불균형을 이룰수록, 남성배우자의 정서적 학대 및 일상통제의 수준이높아지기도 하였다(Kaukinen, 2004). 협상이론(bargaining theory)에따르면, 취업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은 남성배우자와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소득수준향상으로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이 가능해진다.

#### 4. 직업훈련 및 경제적 자립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자립자활교육의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규정(제8조 제1항 제6호)은 보호시설에서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자립자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약75%의 보호시설 거주 여성이 이 조항에 따라 취업 관련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경남, 2017).

물론 직업훈련, 자활 프로그램의 참여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여성의 심리적 안정 지원과 의료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폭력으로부터 회복 과정에 있는 여성들, 피해여성들의 회복 과정은 폭력 피해 경험의 차이, 상황적 특수성, 입소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피해여성들은 안전이 확보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회복된 이후, 자립을통한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욕구를 가질 수 있다. 류은주(2009)는 퇴소 이후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 성공을 위해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립의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피해여성에게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한 문제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피해여성에게 노동은 안전과 병행되기 어렵다. 신나래(2017)에 따르면, 보호시설 입소 과정 중경제활동을 원하는 피해여성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신분노출의 가능성 때문에 위협받고 있었다. 보호시설 퇴소 이후에도 가해자의 추적 가능성으로 인해 본래의 직장과 직종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쉼터 위치가 노출되어 동료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의 사용에는 신분노출이라는 한계가 있다. 주민등록등본 제출,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 등의절차를 거쳐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가 특정직종, 특히 성별 분리 현상이 보고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직종으로 분류되는 저숙련·저임금의 서비스 직종에 국한되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메이크업, 네일, 바리스타, 조리사, 가사도우미 등의 직종에 한정되어 직업훈련이 제공된다. 이는 취업 가능성과 기회를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여성을 다시 저임금 직종으로 유도하는 굴레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개개인의 직업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공하는 몇몇 제한적인 직업훈련은 피해여성의 자립에 한계를 가진다. 현재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는 입소기간과 현실적 자원 등을 고려했을 때 전문적·장기적인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피해여성 개개인의 직업경력과 직업적성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며, 다양한 직업의 소개 및 직업적성검사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보호시설 입소과정을 거치며 피해여성의 직업경력이 또 다시 단절되는 경우도 발생

한다. 하지만 보호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은 제2의 경력단절이 아닌 직업적 성장과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단기교육과 단순노무직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탈폭력의 과정에서 경제적 자립역량 또한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피해여성들은 보호시설에 거주 중 노동과 생산에 대한 욕구를 나타 냈으며(신나래, 2017), 보호시설 내 노동이 가능한 환경의 제공과 공동 노동·공동분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지속적인 일거리의 공급에 대한 욕구도 나타냈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보호시설에 거주하면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들 또한 보고 되었다. 김종숙(2015)의 연구에서 기혼여성들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들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부족, 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들의 부재, 금전 및 시간여유의 부족 등이 제시 되었다. 보호시설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했던 149명의 피해여성 중 25%가 직업훈련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불충분한 교육 기간, 적성에 맞지 않는 교육 내용, 직업훈련 이후의 불투명한 직업 전망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소숙희·최승아, 2019).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여성들은 비피해여성들에 비해 취업률은 높지만, 그에 비해 소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소숙희·최승아, 2019). 가정폭력피해시설에서 지원되는 직업훈련이 이용자의 실제취·창업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퇴소 이후에도 직업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 제3장

##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제도 현황 분석

제1절 한국의 가정폭력피해자 현황 제2절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제도 현황 제3절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제도의 문제점

### 제<sup>3장</sup> ▮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제도 현황 분석

#### 제1절 한국의 가정폭력피해자 현황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식 및 여성주의의 성장과 함께 가정폭력의 문제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 하고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송아영, 2017). 한국도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처벌 등과 같은 법률적 노력을 함께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가정폭력은 여전히 빈번하게 관찰된다.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4.1%로 나타났다(이인선 외, 2017).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로부터의 직접적인 폭력피해여성은 12.1%,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남성은 8.6%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 유형 중 신체적 학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은 3.3%가 피해 경험이 있고, 남성은 1.6%가 피해 경험이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정도 신체적 피해를 경험한 비

율이 높았다. 종합하면 10가구 중 약 1가구에서는 여성배우자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대 유형 중에서 신체적 학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100가구 중 약 3가구에서 여성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통제(방임)를 포함하면 2016년 부부폭력률은 무려 41.5%에 이른다.

〈표 3-1〉 2016년 가정폭력(부부폭력) 실태조사 결과

(단위: %)

78	전체		여성			남성	
구분	선세	피해	가해	상호폭력	피해	가해	상호폭력
부부폭력률(1)	14.1	12.1	9.1	6.5	8.6	11.6	6.2
부부폭력률(2)	41.5	41.5	34.4	33.1	33.3	35.6	25.3
신체적 폭력	3.7	3.3	1.9	0.9	1.6	2.1	0.6
경한 폭력	3.6	3.2	1.8	0.9	1.6	2.1	0.6
중한 폭력	0.4	0.5	0.2	-	0.1	-	-
정서적 폭력	12.5	10.5	8.4	6.2	7.7	10.5	5.9
경제적 폭력	2.5	2.4	1.1	0.3	0.8	1.5	0.4
성적 폭력	2.2	2.3	0.3	0.1	0.3	1.8	0.1
통제	37.7	29.7	29.8	22.8	30.4	31.8	23.5

- 주: 1) 백분율은 3,961명(응답자 수)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2) 분석에서 무응답은 제외함.
  - 3) 부부폭력률(1)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임.
  - 4) 부부폭력률(2)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통제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임,
- 5) 유형별 폭력률은 각 유형에 해당하는 폭력행동들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임. 신체적 폭력률은 경한 신체적 폭력이나 중한 신체적 폭력 행동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임. 자료: 이인선 외(2017), p.73.

2007년 이후 가정폭력률을 추세적으로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송아영, 2017). 2013년까지 조사된 가정폭력률은 경제적·정서적·신체적 폭력과 방임, 성학대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WHO 등

국제 폭력률 수치와의 비교분석을 위해 통제행위에 기존 방임에 관한 두 문항을 포함하여 가정폭력 발생률이 계산되었다. 이러한 실태조사 분석 방법에서의 차이가 발견되나 전체 폭력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가장 높은 폭력률인 53.8%를 기록하였으며. 40% 이상의 폭력률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지난 1년간 한국 인 10명 중 4명이 한 가지 이상의 부부폭력을 경험하였음을 보여준다.3)

〈표 3-2〉가정폭력 발생률 변화 추이

(단위: %)

		신체적 폭력							
구분	부부 폭력률	경한 폭력	중한 폭력	전체 신체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2016	41.5	3.6	0.4	3.7	12.5	2.5	2.2	-	37.7
2013	45.5	7.2	0.6	7.3	37.2	5.3	5.4	27.3	-
2010	53.8	16.3	3.3	16.7	16.7	10.1	10.4	30.5	-
2007	40.3	11.1	4.8	11.6	11.6	4.1	10.5	19.6	-

주: 부부폭력률은 지난 1년 동안 제시된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경우를 의미함. 2013년 까지의 폭력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그리고 방임을 포함 하여 전체 폭력률이 계산되었고, 2016년부터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통제를 포함해 폭력률이 계산되었음.

자료: 송아영(2017), p.57.

박영주(2017)는 경찰청 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가정폭력 발생과 검거 및 조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정폭력 신고는 2014년 227,608건에서 2016년 264,567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

<sup>3)</sup> 다만 추세적으로 볼 때 가정폭력률 증가에는 가정폭력 발생건수의 증가뿐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건수 증가나,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로 과거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날 에는 폭력으로 인지한 것의 영향도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박영주. 2017).

고 있다. 특히 2016년 기준 전국적으로 가정폭력의 신고는 264,567건 이었으며, 이 중 45,619건이 검거되었다. 즉, 경찰이 인지한 가정폭력의 17.2%만이 검거된 것이다.

〈표 3-3〉가정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건, 명)

	신고	인구 검거		인구		조치		
구분	건수	10만 명당 신고건수	건수	10만 명당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2014	227,608	448.4	17,557	34.6	18,666	250	18,416	
2015	227,630	446.8	40,828	80.1	47,543	602	46,941	
2016	264,567	517.6	45,619	89.3	53,511	503	53,008	

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6년 연앙인구를 적용함.

자료: 박영주(2017). p.57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그러나 가정폭력 실태를 공식통계로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의 발생과 신고, 그리고 검거에 이르는 과정에서 실제 가정폭력 발생건수와 신고건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신고가 이루어져 형사사법기관이나 상담소 등에서 인지하지 못할 경우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가 매우 어렵다(박영주, 2017: 4).

한편 여성가족부(2017a)의 「2016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실적」에 따르면, 2016년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2,088명 중에서 전업주부의 비율은 61.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스로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생각한다면, 전업주부의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 비율이 높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쉼터 입소자의 직업 현황과 실태조사 응답자의 취업상태를 고려했을 때 고용안정과 관련된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정책의 중요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4〉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직업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	전업 주부	단순 서비 스직	농림 수산 노동 자	농림 수산 업	생산 직	사무 직	자영 업	전문 관리 직	기타
2013	2,755	1,718	298	12	60	74	73	202	108	210
2013	100	62.3	10.8	0.4	2.2	2.7	2.6	7.3	3.9	7.6
2014	2,551	1,557	312	20	33	75	74	149	74	257
2014	100	61.0	12.2	0.8	1.3	2.9	2.9	5.8	2.9	10.0
2015	2,412	1,494	269	4	46	74	68	162	91	204
2015	100	61.9	11.2	0.2	1.9	3.1	2.8	6.7	3.8	8.5
2016	2,088	1,286	220	2	38	62	53	132	78	217
2016	100	61.6	10.5	0.1	1.8	3.0	6.3	6.3	3.7	10.4

자료: 여성가족부(2017a). p.12.

#### 제2절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제도 현황

#### 1. 가정폭력방지 정책 현황4)

1997년 제정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은 이후 2015년(5월)까지 18차례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지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변동되어 왔다. 제정 초기「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의 업무는 가정폭력피해자의일시 보호와 함께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통한 가정복귀 지원이었다. 2006년「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을 통해「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되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의 업무 중 가정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신체적 치료, 심리적치료, 법률적 지원, 취업정보 제공 및 자립자활교육의 실시 등으로변화하였다.

「가정폭력방지법」내에서의 자립·자활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고, 이는 가족의 유지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인권보호로의정책과 자활지원정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립·자활 개념이처음 도입된 2006년에는 가정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의 사회적·정서적 회복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2006년도의 개정 이후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자활 지원정책이 크게변화하지는 않았지만, 자립·자활 지원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sup>4)</sup> 가정폭력방지 정책의 현황은 여성가족부(2019: 333-460)를 바탕으로 저자들이 재정리하였다.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자립·자활 정책이 진행되었다.

2009년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자립·자활 지원의법적 체계가 구성되었다. 2011년 가정폭력피해자 동반 가족, 경제적자립의 개념이 확대 도입되었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쉼터에서 받고있는 정서적·심리적·법률적 서비스 이외에도 경제적 지원 및 자립을위한 정책서비스까지 확대되었다. 2017년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으로국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본이념 조항 중 하나로 신설, 피해자지원 및 보호 체계 구축 근거 마련을 위한 가정폭력피해의 특수성을고려하여 쉼터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표 3-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추진 연혁

연도	주요 추진 내용
1997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12월)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12월)
1998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7월)
1999	• 가정폭력상담소·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1월) • 가정폭력피해자 일반치료비 지원(1월)
2001	• 여성부 신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이관(1월)
2002	<ul> <li>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3월)</li> <li>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가정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 협약(12월)</li> </ul>
2003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개발·보급(12월)
2004	<ul> <li>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89개 상담소)</li> <li>'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1월, 4월, 5월)</li> <li>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신고·인가권 → 시·군·구 자치단체장에게 부여</li> <li>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구상권 행사요건 완화 등</li> <li>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 협약(12월)</li> </ul>
2005	•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 협약식 체결(1월) -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아동에 대해 무료진료 지원

연도	주요 추진 내용
2006	<ul> <li>「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개정(4월, 10월)</li> <li>정기(3년) 실태조사 및 초·중·고 예방교육 실시</li> <li>피해아동 거주지 외 취학지원</li> <li>상담소 설치·운영 기준 강화 등</li> <li>교육훈련시설 신고제 도입</li> <li>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구상권 임의규정으로 변경</li> </ul>
2007	<ul> <li>「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연구용역 실시 (2006. 8.~2007. 8.)</li> <li>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의 폭력 재발률과 배우자 만족도 등 효과성 검증</li> </ul>
2008	• 2008년 주거지원사업 시범실시 - 서울, 부산 2개 지역에 임대주택 21호 공급
2009	<ul> <li>「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개정 (2009. 11. 9. 시행)</li> <li>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li> <li>국가나 지자체에서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li> <li>보호시설 입소·퇴소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li> <li>여성긴급전화 1366 법적 근거 마련</li> <li>「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1. 1. 시행예정)</li> <li>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및 동반아동에 대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지원 근거 마련</li> <li>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 개편 추진</li> </ul>
2010	<ul> <li>「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개정(1월, 5월, 11월)</li> <li>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및 동반아동에 대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의료비 등 지원 근거 마련</li> <li>피해자 긴급구조 시 경찰관 동행</li> <li>가정폭력 관련 시설평가 및 평가결과 지원 등에 반영</li> <li>가정폭력예방, 계도 등을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배포·송출 근거 마련</li> <li>각급 학교에서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통합실시</li> <li>장애인 가정폭력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 개선</li> <li>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li> <li>전국 16개 시·도 3,800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조사 등</li> <li>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li> <li>상담소, 보호시설, 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 363개소 평가실시</li> </ul>

연도	주요 추진 내용
2011	<ul> <li>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마련(5월,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협의)</li> <li>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 조치권 도입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li> <li>주거지원시설 3개 지역 추가 확대(대구, 경기(안산), 제주)</li> <li>가족보호시설 설치 지원</li> <li>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설치운영기관 선정(8개소)</li> <li>보호시설 운영비를 절감하여 입소자 중 비수급자에게 생계비 지원</li> <li>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118개 상담소)</li> <li>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li> <li>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 운영인력 역량강화 교육: 390명(양평원 위탁)</li> <li>※ 성폭력 상담운영인력 포함 참여인원: 744명</li> <li>가정폭력 사건 수사관계자를 위한 인권의식교육 시범실시(52회 2,272명)</li> </ul>
2012	<ul> <li>「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li> <li>경찰관의 현장출입 및 조사권 도입</li> <li>가정폭력피해자보호명령제도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용역(3~9월)</li> <li>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안내서 제작(50,000부)</li> <li>가정폭력 사건 수사관계자를 위한 인권의식교육 확대(36,239명)</li> <li>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5개)</li> <li>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확대(36호)</li> <li>보호시설 입소 아동 교육비 지원</li> <li>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수혜자 확대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치료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2012. 5.∼12., 11개 지역별 1개소 운영)</li> <li>여성폭력피해 상담소 관리 및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 연구(9~12월)</li> <li>가정폭력피해 대상과 유형별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발연구(2012. 7.~2013. 1.)</li> <li>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122개 상담소)</li> </ul>
2013	<ul> <li>8개 부처 합동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마련(6월)</li> <li>2013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li> <li>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 (3개소)</li> <li>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40호)</li> <li>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연 5만 원 이내)</li> <li>아동교육비, 교복비 지원대상 확대</li> <li>아동교육지원비(부교재비: 초등·중학생, 학용품비: 초등·중·고등학생)</li> <li>교복비(중·고등학교 신입생, 전학생)</li> <li>보호시설에 입소한 비수급자에 대한 비일상적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추가</li> </ul>

연도	주요 추진 내용
2014	<ul> <li>「가정폭력방지법」일부개정안 시행(2014. 1. 31.)</li> <li>경찰관 현장출동 의무화, 가정폭력 의무대상기관 확대(학교→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경찰관 현장출입·조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li> <li>「가정폭력방지법」일부개정안 시행(2014. 7. 22.)</li> <li>가정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및 부진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li> <li>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 (2개소)</li> <li>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확대(38호)</li> <li>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신규지원(2014. 1. ~)</li> <li>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비 신규지원(2014. 1. ~)</li> </ul>
2015	<ul> <li>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 (2개소)</li> <li>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43호)</li> <li>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신규운영 지원</li> <li>「가정폭력방지법」일부개정안 시행(2015. 12. 23.)</li> <li>가정폭력 추방주간(매년 11. 25.~12. 1.) 신설 등</li> </ul>
2016	<ul> <li>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확대(30호)</li> <li>「가정폭력방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2016. 9. 3.)</li> <li>가정폭력 관련 시설 휴·폐지 시 시설이용자의 권익보호조치 시행</li> <li>가정폭력 관련 시설 폐지 시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 중 한 곳에 폐지 신고서 제출 가능</li> </ul>
2017	<ul> <li>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확대(20호)</li> <li>「가정폭력방지법」일부개정안 국회의결(2017. 12. 5./2018. 6. 시행)</li> <li>가정폭력피해자 인권보호 관점의 권리보장 강화의 기본이념 신설</li> <li>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 강화</li> <li>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수사·재판 과정 동행 등 다양한 지원 규정</li> <li>가정폭력범죄 관련,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시 벌칙 조항신설</li> <li>「가정폭력방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2017. 11. 29.)</li> <li>긴급전화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및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절차 완화</li> </ul>

연도	주요 추진 내용
2018	<ul> <li>「가정폭력방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2018. 6. 13.)</li> <li>가정폭력피해자 인권보호 관점의 권리보장 강화의 기본이념 신설</li> <li>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 강화</li> <li>가정폭력상담소를 외국인·장애인 대상 특화 운영</li> <li>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수사·재판 과정 동행 등 다양한 지원 규정</li> <li>가정폭력범죄 관련,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시 벌칙 조항신설</li> <li>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확대(20호)</li> <li>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절차 간소화 등 건강지원 강화(1월)</li> <li>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 지원 10개소 확대(10→20개소)</li> <li>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 관련 교육 추진</li> </ul>

자료: 여성가족부(2019). pp.11~14.

#### 2.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목적을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 등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지원"에 두고 있다.5)

〈표 3-6〉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제도

구분	내용
상담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전화, 면접, 사이버상담) 및 가정폭력피해상담소 를 통한 상담지원
의료지원	· 지자체, 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무료 법률지원	· 가정폭력피해자(국내 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해 가정폭력에 관련 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법률구조 신청

<sup>5)</sup> http://www.mogef.go.kr/cs/wvs/cs\_wvs\_f002.do, 최종검색일: 2019. 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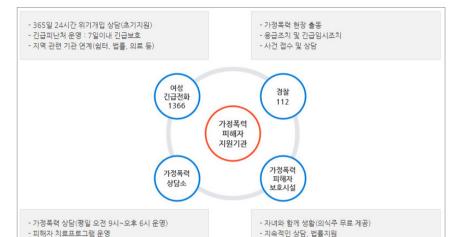
구분	내용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보호시설 지원	<ul> <li>가정폭력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li> <li>단기보호시설: 6개월, 장기보호시설: 2년 이내, 긴급피난처: 최대 7일</li> <li>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지원을 위해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 지원</li> <li>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지급</li> </ul>				
주거지원	· 가정폭력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출처: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홈페이지(https://www.women1366.kr/\_sub03/sub03\_01a.html), 최종검색일: 2019, 7, 19.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통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가정폭력피해자 일시 보호 및 숙식 제공,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재발 방지,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주거시설 지원, 상담 및 구조 등 가정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보호시설) 등이 있다. 또한최근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비수급자에한해 입소기간 연장 및 생계비 지원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6

<sup>6)</sup> 여성가족부(2017b). pp.15.

- 학습지원(비밀 전학 등), 의료지원서비스 - 자립지원(취업연계,직업훈련 등)



[그림 3-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추진 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cs/wvs/cs\_wvs f002.do). 최종검색일: 2019. 7. 19.

- 가해자 교정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 부부 및 집단상담 -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 교육 - 관련 기관 연계(쉼터, 법률, 의료등)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대상자, 폭력 유형, 서비스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지원 및 운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설립 목적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종류는 16개로 구분할 수 있다(여성 가족부, 2018a). 청소년성문화센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여성긴급 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통합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상담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일반 및 청소년) 등이 있다.

2019년 1월 기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성폭력피해 상담소는 총 170개이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총 31개, 해바라기센터는 총 39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총 40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은 총 32개이다. 가정폭력상담소는 통합상담소를 포함해 총 207개(통합 40개)이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총 66개이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총 18개로 전체가 국비지원이 된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은 314호이며, 청소년성문화센터는 58개 기관이다(여성가족부, 2019).

〈표 3-7〉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현황

(2019년 1월 기준) (단위: 개)

번호	시설별	시설 수	대상	보호기간(최대)	비고
1	성폭력피해 상담소	170	성폭력피해자		이용 시설
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장애인, 특 별지원, 자립지원, 공동생활)	31	성폭력피해여성	일반(1년+1년 6월) 장애인(2년+회복 시) 특별지원(18세+2년) 자립지원(2년+2년)	생활 시설
3	해바라기센터	39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이용 시설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일반·청소년)	40	일반성인 성매매피해자 등	일반(1년+1년 6월) 청소년(19세가 될 때까지+2년)	생활 시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2 (11)	탈성매매한 자로 서 자활조건이 성 숙되었다고 판단 되는 자	2년+2년	생활 시설
6	대안교육 위탁기관	2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	1년(1년 단위로 최 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이용 시설
7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1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1년(수사·소송 진행 중인 경우 이에 필 요한 기간까지 연장)	생활 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으로 상담 또는 긴급한 보호·구조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피해상담을 언제라도 받을 수 있도록 국번 없는 특수전화를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피해자에 대해 센터는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상담기관, 보호시설,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등), 기타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9). 2019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단, 서울·경기 1개 소 추가).

주: 해바라기센터 1개소 신규 설치(2018. 하반기),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자립형 보호시설 1개소 신규 설치(2018. 하반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20호 추가 지원(2019 상반기~), 통합상담소 10개소 추가 지원(2019. 1월~), 일반상담소 15개소 추가 지원(2019. 1월~) 자료: 여성가족부(2019), pp.20.

(표 3-8)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현황(2017년)

(단위: 건)

상담	유형	상담조치 결과
구분	총계	구분 총계
전체	289,032	전체 390,915
가정폭력	180,326	관련기관 연계 336,235
성폭력	21,470	보호시설 48,447
성매매	3,405	전문상담기관 190,057
데이트폭력	8,291	의료기관 15,941
 가족문제	6,302	법률기관 15,753
부부갈등	5,027	수사기관 61,996
이혼	2,477	기타 4,041
중독	1,445	현장출동 협조요청 7,087
법률	2,212	긴급피난처 피신 6,465
기타	58,077	직접 상담 32,111
		2차 상담 권고 4,430
		기타 4,587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www.data.go.kr/dataset/15022590/fileData.do), 최종검색일: 2019. 7. 19.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 또는 피해 신고 접수, 긴급히 보호가 필요하거나 가정 및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정 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의료 기관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여성가족부, 2019).

(단위: 건,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피해자	건수	148,347	139,024	142,134	157,298	178,369	184,821	181,290	196,166
	계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심리· 정서적	건수	99,590	96,025	95,754	107,073	123,845	124,206	123,646	138,014
	지원	비중	67.1	69	67.4	68.1	69.4	67.2	68	70.4
	의료	건수	1,854	1,736	2,170	4,221	3,019	3,194	4,655	3,230
피해자	지원	비중	1.2	1	1.5	2.7	1.7	1.7	3	1.6
지원	시설 입소	건수	4,407	3,411	3,544	3,196	3,007	2,547	2,362	2,486
	연계	비중	3	3	2.5	2	1.7	1.4	1	1.3
	수사 법적	건수	26,191	18,599	21,483	20,262	21,188	21,996	21,427	17,518
	지원	비중	17.7	13	15.1	12.9	11.9	11.9	12	8.9
	기타	건수	16,305	19,253	19,183	22,546	27,310	32,878	29,200	34,918
	기타 	비중	11	14	13.5	14.3	15.3	17.8	16	17.8
	가해자	건수	56,975	53,426	51,586	63,344	64,680	78,646	80,052	81,134
	계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가해자 지원	선도	건수	56,357	52,785	50,702	62,505	63,645	77,354	78,462	79,925
	면담 등	비중	98.9	99	98.3	98.7	98.4	98.4	98	98.5
	타 기관	건수	618	641	884	839	1,035	1,292	1,590	1,209
의뢰	의뢰	비중	1.1	1	1.7	1.3	1.6	1.6	2	1.5

출처: e-나라지표 홈페이지(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4), 최종검색일: 2019. 7. 19.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가정 폭력피해자가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해당 정책 집행을 위해 연간 2억 원의 예산이 배정 되었으며, 가정폭력피해자의 직업 및 진학 교육을 통한 취·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 1인당 지원단가는 교육과정 비용이 상이하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표 3-10〉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실시 현황

(단위: 명, 건)

	중경기인 지어중검		취업지원				
연도	훈련지원 인원	직업훈련 건수	구직정보 제공	취업알선	취업지원 기관연계	취업인원	창업인원
2014	443	444	239	173	140	154	10
2015	488	1959	516	275	189	203	1
2016	563	2057	621	399	149	206	1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2017), 허민숙(2017: 12) 재인용.

주요 훈련직종으로는 컴퓨터 자격증, 바리스타, 미용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웃음치료사, 한식·양식조리사, 베이비시터, 운전면허 등이 있다. 다만 해당 정책은 수혜 대상이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로 제한 되어 있어, 가정폭력피해자 중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자는 취업연계서비스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누릴 수 없다(서재인, 2017).

〈표 3-11〉한국여성의전화 쉼터 주요 훈련직종

(단위: 명, 건)

연도	훈련직종	인원	직업훈련건수
	CAD 자격증	1	1
	목욕관리사	1	1
	보육교사	2	2
	바리스타	1	1
	운전면허	1	1
	사회복지사	2	2
2014	일본어회화	1	1
	요양보호사	2	2
	중졸검정고시	1	1
	옷수선	1	1
	미용사자격과정	1	1
	계	14	14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2	2
	성록력전문상담원교육	1	1
	한식조리사	1	1
	청소년지도사	1	1
	전산회계	1	1
	초크아트 자격증	1	1
2015	운전면허	2	2
	클레이아트 및 종이접기	1	1
	영문법(고졸검정고시)	1	1
	가죽공예	1	1
	요양보호사	1	1
	POP 및 캘리그래퍼	1	1
	계	14	14

자료: 서재인(2017). pp.17~18.

####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제적 자립지원 현황

본 항에서는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전국 66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60개 기관이 응답하였다. 이하의 내용은 응답한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응답기관의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3-12〉 조사대상기관의 일반 현황 1

(단위: 개)

구분	пи с	시설 유형				
<b>十</b> 世	시설 수	일반	가족보호	중장기		
강원권	5	4	1	0		
경남권	6	3	3	0		
경인권	10	8	1	1		
대구경북권	4	4	0	0		
부산울산권	3	1	1	1		
서울권	11	8	2	1		
광주전라권	11	4	6	1		
제주권	2	0	2	0		
충청권	8	3	5	0		
합계	60	35	21	4		

#### 〈표 3-13〉 조사대상기관의 일반 현황 2

(단위: 명)

입소정원	상근종사자	자원봉사자	연중 입소	연중 퇴소	연말
	수	수(비상근)	인원(2018)	인원(2018)	현원(2018)
16.4	4.83	0.53	42.77	39.8	10.7

#### 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2018년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0개 기관 중 57개 기관(95.0%)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정보기술자격, 음식조리, 요양보호사, 커피 바리스타 등의 순이었으며, 기관당 평균 프로그램 참여실적은 평균 9.28명/11.8건으로 조사되었다.

〈표 3-14〉 직업훈련 프로그램 상위 10개

(단위: 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설 수
정보기술자격	39
음식조리	39
요양보호사	33
커피 바리스타, 디저트	26
운전면허	24
네일, 피부, 미용	19
산모, 신생아, 아동 돌봄	14
~~~~~~~~~~~~~~~~~~~~~~~~~~~~~~~~~~~~~	12
 패션	12
간호조무사	11

반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3개 기관 중 2개 기관은 미운영 사유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1개 기관은 '재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 나. 취업알선 프로그램

2018년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운영한다'가 50개 기관(83.3%), '운영하지 않는다'가 8개기관(13.3%), 무응답이 2개 기관(3.3%)으로 나타났으며, 운영기관당평균 12.92건/6.4명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응답한 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연계 방식을 조사한 결과 '비공식적 친분이나 모임을 통한 알선'이 33개 기관(66%), '공식적 취업알선 기관을 통한 서비스 연계'가 32개 기관(64%), '기타'가 8개 기관(16%)으로 나타났다. '기타'를 선택한 기관들은 주로 구인정보지, 구직사이트,지역신문 등을 이용해 운영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15〉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방식

(단위: 개)

취업연계 방식	기관 수
1. 공식적 취업알선 기관을 통한 서비스 연계	32
2. 비공식적 친분이나 모임을 통한 알선	33
3. 기타	8

주: 중복응답 가능.

반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8개기관의 미운영 사유는 '기타'가 6개 기관(75.0%), '재원이 부족해서'가 1개 기관(12.5%), '마땅히 연계할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1개 기관(12.5%), 무응답이 1개 기관(12.5%)으로 나타났다.

기타를 선택한 기관들의 미운영 사유를 살펴보면, 본 시설은 자립

보다는 피해자들의 치료·회복이 우선시되는 기관이어서, 노출로 인한 위험부담 때문에, 입소자 개개인이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아르바이트 활동을 해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일이 급해서, 4대 보험 미가입을 원해 적극적인 알선이 어려워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매뉴얼이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표 3-16〉취업알선 프로그램 미운영 사유

(단위: 개)

취업연계 방식	기관 수
1. 재원이 부족해서	1
2. 마땅히 연계할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1
3. 운영해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0
4. 취업알선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없어서	0
5. 기타	6
무응답	1

주: 중복응답 가능.

## 다. 퇴소 후 거주지원

2018년 퇴소한 인원 중 퇴소 후 거주지원을 실시한 기관은 총 44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원을 받은 인원은 총 295명으로, 거주지 원을 실시한 기관당 평균 6.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거주지원은 '기타 주거 관련 지원'이 32개 기관(72.7%), '(임대주택은 아니지만) 거주지 알선'이 22개 기관(50.0%), '임대주택 입주'가 19개 기관 (43.2%)으로 나타났다. '기타 주거 관련 지원'은 자립정착금 지원, 보증금 지원, 타 쉼터 연계, 공동생활가정 연계 등으로 나타났다.

#### 〈표 3-17〉 퇴소 후 거주지원 내용

(단위: 개)

취업연계 방식	기관 수
1. 임대주택 입주	19
2. (임대주택은 아니지만) 거주지 알선	22
3. 기타 주거 관련 지원	32

주: 중복응답 가능.

#### 라. 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

기관을 퇴소한 분들의 취업활동이나 다른 형태의 정서적·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follow-u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2개 기관(53.3%)이 운영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대체 적으로 퇴소자 모임, 후원자연계, 자조모임, 입소자-퇴소자 만남, 심신 회복캠프, 문화체험, 자체 프로그램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사 법적 지원, 후원품 나눔, 성인예술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8개 기관(30.0%)이 운영중이라고 응답하였다. 대체적으로 종교시설과 연계, 자치단체와 연계,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 마. 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 평가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입소자들의 직업훈련 욕구는 다양하나 배분된 보조금액이 너무 적어 입소자들이 자립을 희망하는 직종을 훈련할 수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모든 기관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노동부 워크넷에 등록 시 가해자에게 직장이 노출될 염려가 있어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알선이 힘들다고 토로하였다.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지원 주거지원사업의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후 입주까지의 기간이 길어 현실적으로 퇴소와 입주 시기가 맞지 않아 불가능하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역시 가정폭력피해자 의 피해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 정책적 지원 및 조치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향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또는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정책적 지원 및 조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산 확대와 더불어 신변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의 경우 직장이 노출될 위험 없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설에 입소하면 부여받는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여 고용노동부 훈련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4. 기타 지원 프로그램 및 사례

#### 가.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프(beautiful life)'

한국여성의전화가 2017년 시작한 프로그램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 프'는 쉼터 퇴소 이후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자립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취업난, 생계난, 건강 문제, 주거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서재인, 2017).

〈표 3-18〉 2019년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프' 공고

지원대상	가정폭력피해 경험이 있고 자립 의지가 있는 여성
선정자 지원내용	교육, 생활, 주거, 건강, 여행 등 1개 분야 선택, 최대 3백만 원
선발인원	30명 내외
	- 지원자의 자립에 대한 의지와 동기가 확실한지
	- 지원금 희망 사용 목적이 지원자의 자립에 도움이 되는지
선발기준	- 지원금 사용 계획 및 예산 편성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 교육 및 적금 등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지
	-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높은지
	- 생활분야 24명
2017년	- 주거안정비 14명
지원결과	- 직업훈련비 16명
	- 총 54명, 121,640,000원 지원

자료: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http://hotline.or.kr/board\_notice/54577, 최종검색일: 2019. 9. 10)와 서재인(2017: 20~21)의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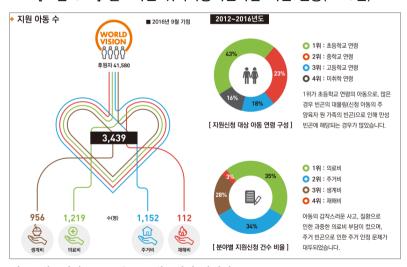
## 나. 위기아동지원사업 '희망의 샘' 7)

월드비전의 위기아동지원사업 '희망의 샘'은 갑작스런 위기상황

<sup>7)</sup> 이 부분의 내용은 월드비전 홈페이지(https://www.helpchild.or.kr/introduce/who-we-are)의 위기 아동지원사업 사업안내를 참조하여 요약, 작성하였다. 최종검색일: 2019. 7. 19.

(가정폭력, 실직, 이혼, 가구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질병, 재해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만 23세 이하의 유아 및 아동·청소년과 같이 생활하는 가정,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3개월 이내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긍정적인회복이 가능한 가정 등이다.

지원항목은 생계비(공과금, 관리비, 필수가전제품, 향후 생계비 등), 의료비(진단·검사비, 수술 및 입원 치료비, 만성·중증·희귀 질환, 심리치료비, 보조기구 임대·구입비 등), 주거비(월 임대료, 전·월세 보증금, 임시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 등이다. 선정일 기준으로 1년 내에 한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동일한 위기 사유의 지원은 1회로제한한다. 단, 아동의 상황에 따라 예외사항을 둘 수 있다.



[그림 3-2]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사업 지원 현황(2016년)

자료: 월드비전(2016). '2016 월드비전 사례집, p.3.

#### 제3절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제도의 문제점

성매매피해여성 지원기관과는 달리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은 자활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집중적인 자활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정부지원도 연속적이지 못하고, 가정폭력피해자 특성상 취업의 장애요소(정신적인 트라우마, 거주지 노출 위험, 낙인 등)가 많아 취업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여성가족부의 직업훈련비 수혜대상이 쉼터 등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취업지원 대상에 가정폭력 보호시설 미입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보호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 혹은 자녀의 통학 문제로 입소를 망설이는 경우 등 자녀동반 불가 문제로 가정폭력피해자 중 쉼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관연계, 취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취업 안정성 및 지속성, 자립 실현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조사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앞선 장에서도 간략히 언급한 바 있지만, 본 절에서는 전국 66개 피해자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중 주관식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1. 신변안전

가정폭력으로 인해 임시로 쉼터에서 거주하는 피해여성의 경우 신변 안전이 확보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다. 쉼터거주자들은 자신의 주거지가 노출되면 가정폭력가해자에 의한 폭력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주로 일시적이고 비가시적인 일자리를 '선호'한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요구하거나 또는 4대 보험 가입을 하도록 요구하는 공식적인 일자리는 모두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재훈 외(2013)는 신변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일자리 연계 또는 일자리 전달체계 개편이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모든 일자리 지원 및 연계 또는 일자리 전달체계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체계와 전문인력 역시 부재하다. 예컨대 가정폭력피해 경험 여성에게는 4대보험 등록, 공공근로 연계 시 등록, 사회적 기업 신청 시 등록과 같은 절차는 모두 신변노출 위험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한 서비스체계이다.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신변노출 위험 때문에 사실상 현지원체계에서는 노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일용직 또는 단순직과 같은 일시적 일자리를 선호하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상담소 등에서 연계되어 본 시설로 입소하고 있으나 주소 이전, 남편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변노출 등의 문제로 4대 보험이 들어가는 곳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 이에 식당 등에서 단기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해소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부산울산 1)8)

다양한 루트를 통해 취업알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4대 보험 가입 시 노출이 되어 취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 5)

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일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대 보험 적용이 되는 직장은 노출의 위험이 있어서 추후 4대 보험에서의 비공 개가 이루어진다면 시설 내에서도 입소자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 6)

장애인시설처럼 보호작업장을 만들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급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가정폭력피해여성은 안전한 곳에서 직업훈련과 동시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 4)

대부분의 입소자들이 노출의 위험 때문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가해자들에 의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업을 하려 해도 현재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들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 6)

## 2. 양육지원과 주거지원

많은 경우의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그 어느 폭력피해여성들보다도 양육지원과 자립·자활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가정 폭력에 노출된 피해여성들의 경우 가해자를 피해 원래 거주했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욕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거주

<sup>8)</sup> 이하 직접 인용된 내용은 각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주관식으로 응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거주지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망을 형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동반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입소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아 직업훈련을 하기에는 시간대가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 성공패키지와 같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하면 본주소지가 대전이 아니어서 신청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자들은 전국적으로 입소를 하기 때문에 대전 주소지를 가 지고 있지 않아 대전에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는 입소한 후 많은 무기력감과 우울 등 심리ㆍ정서 적 불안 때문에 직업훈련을 하고 싶다는 열정보다는 잠시 쉬고 싶고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거나 당장 자녀의 학업이나 양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간을 가지기 보다는 취업을 바로 하고 싶어 합니다. (충청 3)

지난 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를 받았던 내담자 중에 자립에 성공한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하던 전업주부들이 일자리를 얻는다는 건 실제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며, 자녀들과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도 드문 것이 사실이며, 가정폭력에서 벗어난 여성 들의 자립은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성이 혼자 서도 아이를 양육하며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피해자 우선의 취업제공 등 사회적 지원과. 인근지역의 많은 유관기관들의 협조와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대구경북 3)

주거지원에 따로 직업훈련비가 나오고 있지 않고. 시설에 있는 직업훈련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고. 주거지원에 있으면서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도 많은 불편함이 있어 대부분 알바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 6)

## 3.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지원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중요하다는 지적은 가정폭력 관련 연구자들과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박영란, 2007; 정춘숙 외, 2008). 특히 창업지원, 기술교육 등에 대한 욕구와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많다(정춘숙 외, 2008). 따라서 쉼터에서는 자격증취득을 위한 지원, 직업훈련 과정 연계 등을 해 왔다. 그러나 개인 상황의 변화, 지원의 형평성 등으로 장기간을 요하는 훈련과정은 지원에어려움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이 2010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전하면서 자활과 자립 지원에 대한예산은 대폭 축소되었다.

우리나라 한 가구 당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여성의 취업률은 점정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쉼터에 입소할 당시부터 이미 직업을 가진 분들이 대다수이고, 신변노출로 인해 기존의 직장을 퇴직 할 것을 권유하면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직업이 없는 피해여성일 경우에도 2~3개월 이상 걸리는 직업훈련보다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크기에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강제성이 없으므로 무리해서 권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지원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경남 4)

입소자들의 직업훈련 욕구 직종은 다양하나 배분된 보조금금액이 너무 적어 입소자들이 자립을 위해 꼭 하고 싶어 하는 직종을 훈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5)

직업훈련을 비용이 추가 되더라도 하고 있지만 자격증을 따는 것만으로는

직업으로 연계되기가 쉽지 않음. 보다 전문적인 교육으로 직업연결 프로그 램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전라광주 1)

현재 진행 중인 직업훈련은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과 욕구를 충족 시켜줄만한 프로그램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늘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전라광주 2)

입소기간의 연장(최장 1년)으로 간호조무사 등 장기 직업훈련이 가능해졌 지만 일반비용으로 1인당 200만 원 정도의 훈련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내담자정보 노출 우려로 인한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며 내담자보호제도 마련 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라광주 3)

장기적으로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도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내실이 있는 직업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강원 2)

입소자들에 대한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직업 훈련 및 취업이지만 쉼터의 경우는 입·퇴소가 잦아 장기적으로 근무가능한 일자리보다는 쉽게 취업이 가능한 식당이나 시간제 알바 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청 1)

## 4. 소결

현재 전국 67개소가 운영 중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퇴소 후 자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폭력적 관계로 돌아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폭력적 관계로 되돌아 가는 이유 중 주거 마련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한다고 알려져 있다(CPBC News, 2017).9)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이용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되는 바,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호시설 이용 시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입소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기는 하나, 사회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일하기 어렵고, 휴대폰 사용도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정책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변상 안전을 보장받으면서도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해자의 위협 없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유지하면서 가정폭력의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생계비 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으로 경제적 지원정책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정책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양육지원과 함께 신변노출 위험이 없는 보육 및 교육서비스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녀의 보육환경 및 안전을 고려한 일자리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sup>9)</sup> 가톨릭평화방송라디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인터뷰 "아산상 상급, 폭력 피해여성 자립에 쓸 것"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03012&path=201711, 최종검색일: 2017.11.28.

# 제4장

## 가정폭력피해자 경제적 자립 실태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 제4장 기정폭력피해자 경제적 자립 실태 분석

#### 제1절 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들과 접점의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FGI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가정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가정 폭력피해자들과 시설 종사자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FGI는 서울과 대구/경북의 2개 지역에서 수행하였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시설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차이로 인해 실제 피해자 자립지원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각 지역에서 피면접자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3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현재시설에 거주하면서 직업훈련을 비롯한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집단(이하'입소자'), 다음으로는 시설 거주 후 퇴소하여 현재는 실제 자립을시도하고 있는 집단(이하'퇴소자'), 마지막으로 시설에서 일하며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 집단(이하'종사자')이 그 대상이다. 특정 시설의 특성이 해당 지역의 일반적 특성으로 분석되지

않도록 각각의 집단은 해당 지역 내 2~3개 시설에서 온 피해자 혹은 활동가들이 섞이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 입장에서 자립지원의 단계별 상이한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종사자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애로사항이나 정책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당초 각 그룹당 인원은 5명씩 총 30명을 면접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집단의 경우 참여자를 모집하기 어려웠고, 일부 집단은 당초의 계획을 넘어서는 인원이 모집되어 최종적으로는 그룹당 2~7명으로 총 28명을 면접하였다. 면접 참여자 특성은 <표 4-1> ~ <표 4-3>에 집단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표 4-1〉 FGI 참여자 기본정보(입소자)

지역	연령	자녀연령	입소 전 경제활동	쉼터 거주기간	직업훈련	입소 중 경제활동
서울	45세	17, 15, 5세(동반 입소)	사무직 공예강사	1년 (1회 이동)	한식조리사, 옷수선 홈패션(계획)	아르바이트 (식당) 공동작업장
	41세	7, 4세	병원직원, 방문판매	4개월	봉제, 한식 조리사(예정)	
	52세	28, 27세	화장품판매, 서빙, 텔레마케터	5개월	간호조무사 (진행)	
	57세	28, 25세	산후조리원, 농산물판매	3개월	옷수선, 요양보호사 (계획)	아르바이트 (옷 수선)
대구	64세	성인(2명)	자영업 (가해자와 함께)	6개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 보조(계획)	아르바이트 (식당)
	46세	미혼(원가 족 폭력)	판매, 서비스직	3개월	간호조무사 (진행)	아르바이트 구직 중

〈표 4-2〉 FGI 참여자 기본정보(퇴소자)

지역	연령	자녀 연령	과거 경제활동	쉼터 거주기간	직업훈련	현재 경제 활동	주거 지원
서울	49세	없음	제품디자인, 공장	약2년 6개월 (3회)	요양보호사, 포토샵, 엑셀, 장애인활동보조, 운전면허	공동 작업장	Y
	51세	9세	요양 보호사	1년 2개월	한식요리사 (진행 중)	자격증 준비	N
	51세	성인 (2명)	자영업 (가해자와 함께)	1년	밑반찬, 간호조무사 (자비)	간호 조무사 준비	Y
	48세	7세	공장, 식당	약 2.5년 (주거지원 1년)	봉재	봉재	N
	58세	성인	교육 공무원	6개월	직업상담, 마케팅(희망)	구직 중	N
대구	61세	29세, 23세, 17세 (동거)	봉재, 돌봄	6개월	산모관리사	간병사	Y
	42세	3세	경리 (결혼 전)	7개월	바리스타, 티 소믈리에 (자비)	구직 중	Y
	41세	19세, 18세	판매직, 자영업	9개월	전산회계세무, 간호조무사 (진행 중)	물류 회사	Y
	63세	미확인	생산직, 식당	1년	요양보호사	요양 보호사	N
	40세	미혼 (부모 폭력)	식당, 주유소	1년	엑셀, 사회복지사	가폭시설 사회 복지사	N
	52세	26세, 25세	가내공업	1년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자비)	건강상 휴식 중	Y
	52세	25세, 23세	농사, 돌봄	1년	요양보호사, 산모관리사 (자비)	요양 보호사	Y

지역	경력	담당업무	지역	경력	담당업무
서울	3년	상담원	대구	5년	시설장
	7년	회계팀장		1년	직업훈련 등
	5년	쉼터담장		3년	시설장
	9년	시설장		19년	시설장
	12년	시설장		7년	회계, 인사

〈표 4-3〉 FGI 참여자 기본정보(종사자)

서울지역 FGI는 7월 30~31일 양일에 걸쳐 참여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대구지역 FGI는 8월 6일 대구지역에 위치한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반구조화 설문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룹별 인터뷰 시간은 2시간 내외였다. 가정폭력피해자에게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정폭력피해 경험,취업경험, 쉼터에서의 생활, 자립지원 프로그램 경험·평가·만족도, 자립지원 관련 욕구·애로사항, 퇴소 후 경제적 자립 계획(퇴소자는 현재의자립 현황) 등을, 시설 종사자에게는 종사자 기본정보, 자립지원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견해, 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한 견해 등을 질문하였다(부록3 참조).

면접 과정은 제1장에 제시한 것처럼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피면접자의 사전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연구 목적과 내용, 연구 참여자의 권리 (연구 참여 철회 및 중지할 권리 등), 개인정보보호와 비밀유지 원칙 등에 대한 설명을 사전 제시하였다(부록2 참조). 인터뷰 결과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하였다.

면접 결과는 인터뷰 녹취록, 인터뷰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 등을 바탕

으로 3명의 연구자가 번갈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토의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출된 연구결과를 관련전문가 및 기존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깊이와객관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 제2절 분석 결과

가정폭력피해자들의 경제적 자립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GI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자립지원이 갖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이후 경제적 자립지원 욕구를 충족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환경적 맥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환경적 맥락이 현재의 피해자 자립지원제도와 어떤 부정합을 갖는지 분석함으로써 다음 장에 제시될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1. 경제적 자립지원의 의미와 욕구

## 가. 직업훈련의 의미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시설에 입소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폭력피해로부터 회복하는 것이다. 직업훈련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피해로부터 회복한 후 장기 적인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인식되지만, 사실 이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우고 삶의 희망을 제시함으로써 '회복' 자체에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어린이집 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구청이나 그런 관공서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살 희망조차 없고 아이들과 뭐 먹고 살까 진짜 막연했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진짜 그런 동아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서울/입소자)

뭐 배우고 하면서 그 자격증 취득했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되게 좀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요, 제 자존감도 되게 높아진 것 같고 뭔가 계속 잘될 거라는 희망적인 그런 기분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대구경북/퇴소자)

(전산회계 직업훈련이 일하는데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회사는 기본적인 것은 조금 괜찮은데 경리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도움은 많이 됐어요. 일하는 데 도움되는 것보다는 제가 자신감 생기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대구경북/퇴소자)

동시에 직업훈련은 그 본래적인 기능으로서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경제적기반은 이들이 폭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Anderson, 1997; 김은영 외, 2013; 신나래, 2017). 그렇기 때문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은 이 과정이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서 그래도 뭔가를 해서 자격증이라도 따서 자립을 하게 된다면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고 만족인 거죠.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입소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폭력으로 근절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도로 돌아가야 되니까. (서울/ 종사자)

70만 원 딱 받는 그 순간 나 이혼할래요. 나 살 수 있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혼을 진행했는데 기간이 끝났어, 그때 9개월이라서. 그래서 나가셔서 끝장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중략) 그것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업훈련이라는 게 사실은 많이 주면 좋겠어요. (대구경북/종사자)

#### 나. 취업의 의미

직업훈련과 마찬가지로 취업 역시 '회복'과 '자립'의 맥락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 자신감과 의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된다는 것이다. 직업훈련 역시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궁극적인 경제적 자립은 취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그 입소자가 평생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있으면 길게면 1년 있을 수 있는데, 1년 있는 동안에 이분이 알바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알바를 하다가 다시 자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삶의 의욕을 찾으셔. 그러면 알바에서 직업으로 옮겨 가세요. (대구경북/종사자)

저는 쉼터가 그냥 쉬는 쉼터가 아니라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곳이 쉼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1년 채우고 나서 나가라면 저는 뭐 먹고 살아요, 선생님? 저 일자리 좀 어디 파출부라도 당장 못하니까 어떤 전문직이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서울/입소자)

피해자들에게 취업과 직업훈련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취업에는 경제적 자립에는 없는 전혀 다른 의미도 있다. 후에 상술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일체의 경제적 자원이 박탈된 상태에서 시설에 입소하게 되며, 시설에서 숙식은 제공되지만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취업이 장기적 자립 관점이 아닌 '긴급한 경제적 필요 해소의 수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사람들이 자기 통장을 들고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돈이 없으셔서 정말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쓸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을 조금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잠시 정말 피하기 위해서 쌈짓돈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쉼터에 와서 생활하면 쉼터에서 너희는 먹고 숙식이 다 해결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돈이 필요 없지 않아 이게 아니거든요. (중략) 기본적으로 숙식은 해결되지만 끊을 수 없이 계속 나가는 돈은 있단 말이죠. (대구경북/종사자)

아무거나, 지금 아르바이트니까 내가 얼마라도 해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다 보고 있는데 워낙 시골이 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곳이 많고 알바 자리 자체가 거의 없어요. (대구경북/입소자)

요컨대 직업훈련과 취업은 '회복'과 '경제적 자립'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관계도 있지만, 대립적 관계를 갖게 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취업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경제적 상황이 직업훈련과 상충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과 취업의 관계를 살펴볼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 2. 가정폭력피해자의 환경적 맥락

직업훈련과 취업이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있어서 '회복'과 '경제적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원활하게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취업을 하고, 이를 통해 자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이들이 처한 환경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특수한 맥락속에서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에참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을 고려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한다. 여기에서는 이들이 처한 환경적 맥락을 피해자 측면('가정폭력 피해자의 상황')과 시설 측면('시설의 특성과 제약요인')으로 구분하여분석하였다.

## 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상황

## 1) 중고령 여성

시설에 입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구집단으로서의 특성은 이들이 중고령 여성이라는 점이다. 2017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실적에 따르면, 입소자의 60%가 40대 이상이며, 50대 이상도 32%에 이른다(여성가족부, 2018b). 이들의 대부분이 기혼이며 상당수가 자녀가

있는 여성이라는 점은 이들을 둘러싼 특수한 맥락을 형성한다.

특히 경제적 자립의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인구집단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노동시장 약자라는 점이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비록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M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어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30대에 고용률이 급격히 낮아졌다가 40대 중반에 회복되고 이후 점감하는 추세를 보인다(정성미, 2018). 그러나 40대 이후 여성 재취업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저임금 서비스업에 치우친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윤자영, 2018). 주변부 노동시장으로서의 중고령 여성 노동의 문제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도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인력지원센터를 돌아보고 있는데 중년여성, 50세 이상의 여성이 일자리를 갖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여튼 그러네요. (서울/퇴소자)

그것은 없고요, 제가 요양보호사 이거 하러 가기 이전에 이 옆에 직업훈련소라고 있습니다. \*\* 옆에 거기 가서 제가 일단은 어디든 일할 수 있는 곳을제가 신청을 했어요. 등록은 시켰는데 몇 달이 돼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제가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 나이를 가지고그럴까? 저희들이 열심히 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나이 제한을 두더라고요. (대구경북/입소자)

중고령 여성이라는 상황과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은 이들이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사실 비교적 연령이 높은 입소자가 많은 이유 그 자체도 자녀와 관련이 있는데, 일부 참여자들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입소를 늦추기도 한다. 또한 입소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다는 점은 가정폭력피해자가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저를 눌렀죠. 아이들이 클때까지,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설때까지 참고 살자. (서울/퇴소자)

예를 들면 아이가 있는데 저는 생활비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쨌든 쉼터에서 모든 지원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비가, 양육 비가 필요해요. 그럼 이 사람은 바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아르바이트 선택하는 거예요. (서울/종사자)

우리 같은 이런 위치에 있는 여자들이 나이 제한, 뭐 제한, 밖에 나와서일을 하게 되면 가정 얘기도 하게 되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으니까너무 그러다가 나중에 다 병이 드시는 거예요. 혼자서 애를 키우고 육아하며 키우고 케어 다 하다 보니까 먹고도 살아야 되지. (서울/입소자)

## 2)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우선성

자립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대다수는 상당히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속에서 오랜 시간을 생활해 왔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최우선적인 요구는 가해자로부터의 보호와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있다. 경제적 자립지원은이들이 궁극적으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은 높지만, 적어도 그 우선성에 있어서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로부터의 회복만큼 높지는 않다.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불안하고 막 이러고 그럴까? 왜 손을 막 가만히 두지 못하고 이럴까? 알고 보니까 가정폭력이 신체반응이더라고요. 쉼터 가서 알았어요, 약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요. (중략) 오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필히 불안증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어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퇴소자)

가정폭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이 오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서울/입소자)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업훈련이나 취업은 회복의 한 과정이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입소하는 시점에서의 상황은 한편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에 앞서서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필요로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훈련 참여나 취업연계의 과정이 회복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는 취업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하고 노동시장에서 자립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목적이라 할 일반적인 직업 훈련 참여자와 가정폭력피해자를 구분하는 맥락이 된다.

## 3) 경제적 자원의 박탈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가해자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폭력뿐 아니라 경제적 폭력을 함께 경험한다.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가해자와 가정을 유지하는 동안 강제적으로 경제활동 기회를 빼앗기며, 가정에서의 경제적 의사결정권 역시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생활 경제활동 못하고 배우러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거의 정서학대,

밖에를 못 나갔어요. 폭언과 알코올중독자였고요. 아이한테 너무 안 좋은 것을 많이 노출시켰어요. (서울/퇴소자)

그런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나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정말 생활비도 뭐도 안 줘서 휴대폰이 정지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 휴대폰만,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일을 해도 거기서 정말 제때 제때 월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협박이고 (서울/입소자)

다른 참여자들의 경우는 가해자와 함께 경제활동을 하거나. 가해자를 대신해서 가계를 책임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가해자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이는 피해자 본인의 경제활동능력과 무관하게 경제적 자원의 박탈로 이어진다.

저는 26년의 결혼생활 동안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생활을 다 이끌어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손에는 단돈 십 원 한 장 없는 거예요. (서울/퇴소자)

(자영업을) 함께 했지만 그 모든 소득과 경제의 권리는 애들 아빠가 쥐고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약간 조금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요. (대구경북/입소자)

설사 남편과 생활할 때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라고 할지라도 가정폭력피해로 인해 시설로 대피하는 단계에서는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참여자 중 한 사례는 공공 부문 에 장기가 재직했지만, 시설로 피신한 후에는 신워노출 등을 우려하여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경제적 자원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

쉼터에서 사실은 있을 때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돈은 많이 벌었지만 내가 그 돈을 이용할 수는 없었어요, 통장을 다 본인이 관리하고 아예 경제적인 부분 다 포함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수중에 한 푼도 없이 나오게 된 거죠. (서울/퇴소자)

피해자가 본인의 실질적 능력과 무관하게 경제적 자원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입소하게 된다는 것은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 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다수 자산조사를 거치게 되는 한국의 복지시스템을 고려할 때 이들이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또한 이들과 가구원과의관계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닌 폭력의 가해-피해 관계'라는 점은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에서 고려해야 할 맥락이다.

#### 4) 가해자의 추적 위험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가해자의 추적이다. 모든 사례가 그렇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경우 가정폭력가해자는 보호시설로 피신한 피해자를 추적하고, 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강요하는 등 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반복적인 가정폭력이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송아영, 2017), 가해자의 추적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회복보다도 우선하는 요인이다.

고기라도 사 먹이라고 그러면서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냥 그대로 믿고 나가서 아이들 데리고 고기도 사서 먹이고, 이 사람은 저를 어디서 나오는지 벌써 이미 파악을 하고 제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유도를 하는 거죠. (중략). 나와서 거기에서 갖가지 갖고 싶은 것, 애들 씻길 때 필요한 도구 이런 것 사 가지고 딱 왔는데 내가 양손에 짐이 이렇게 있으니까 "OO아, 따라와" 해서 뒤를 딱 봤는데 남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서울/입소자)

여기까지 저희 남편하고 애하고 찾아와서, 요양보호사 학원이 영선시장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다시 나와서 전화 번호를 세 번 바꿨어요. (대구경북/퇴소자)

설사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추적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추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 이러한 폭력재발에 대한 불안감은 일상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하며 가정폭력피해자가사회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제가 학원의 총무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코 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없고 무슨 공문이 들어간다면 제가 그쪽으로 갈 것이 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불안했죠. 행여나 제가 있는 곳이 발각이 되면 제가 앞날이 또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대구경북/입소자)

그거 4대 보험, 그러니까 퇴소 이후는 주거지 열람 제한 신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불안한 거죠, 남편이 아이를 통해서 가족 확인서를 떼보면 엄마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건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주소지는 다른 데. 그러니까 동생 집이나 그쪽에다 놓고. (서울/퇴소자)

만약에 그런 도움을 잘 받고 잘 나와서 잘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노출이 돼서 그것 또 못하게 될 거고 해코지를 또 당하게 되면 아이들도 상처를 받고 거기서 나왔는데 또 다시 쉼터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서울/입소자)

가해자의 추적에 대한 실질적 위험은 후술할 기관의 비공개 시설이라는 불가피한 특성과 맞물려 가정폭력피해자의 상황을 제약한다. 여기에 정서적인 불안감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 과정에서 고려가 필요한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하겠다

### 5)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은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의 자립이 모두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서경남, 2017). 이 중 취업과 직업훈련의 과정은 직접적으로는 경제적 자활의 과정이지만, 전술한 것처럼 정서적·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는 폭력의 결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이들의 사회적 자립 과정에서 고려가 필요한 하나의 맥락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가 양장기능사 지금 자격증을 따러 다니시는데 누가 말 시킬까 봐 겁난대요. 그리고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는데 같이 OO동에 사시는 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어디 들러 가야 된다면서 맨날 혼자 나온대요. 먼저 뛰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이면 그러는데, 지금 그분 9월까지 학원에 다녀야 되는데 매번 그러고 다니셔야 되고... (서울/종사자)

거짓말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혼도 안 된다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아이가 없는데도 있다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재판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심적으로 그것도 부담이 됐었거든요. (서울/퇴소자)

#### 나. 시설의 특성과 제약요인

### 1) 비공개 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비공개 시설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상황적 특성인 '가해자의 추적 위험'의 논리적 귀결로 피해자들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지만, 동시에 가정폭력피해자의 생활을 제약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비공개 시설이라는 특성은 기관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본인명의의 휴대 폰 사용이나 인터넷/이메일 로그인, 주민등록번호의 활용 등을 제약하게 되며, 출입시간 관리 등 생활상의 통제를 경험하게 되는 요인이다.

전에 있던 데는 되게 엄격했어요. 애들도 휴대폰 없이 다니고 모든 것을 나갈 때마다 허락을 받고 4시간 만에 돌아와야 되고, 하여튼 모든 규칙들 이 조금 엄했어요. (서울/입소자)

그래도 제가 시험 치러 가려고 그런 거 다 주민번호 넣어야 되고 이럴 때는 이것이 드러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불안했어요. 이것이 이렇게 막 적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하기는 했어요. 좋지는 않았죠. (대구경북/입소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보니까 갑자기 돈 한 푼 없이 오는 사람들이 되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뭘 다니려면 식당 같은 데를 시간이 10시까지 하고 보통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려고 해도 여기는 9시까지밖에 시간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절이 되면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 (대구경북/퇴소자)

비공개 시설로서의 이와 같은 통제는 단지 '불편함'일 뿐 아니라 입소자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입소 중 단기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시간적 제약으로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제가 느끼기로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 어렵기는 해요. 저희가 비공개 시설이다 보니까 후원이나 정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차단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확보하는 데도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정보도,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일단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담당자들마다 바뀌는 거예요. 법이 바뀌는 게 아니 에요.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대구경북/종사자)

## 2) 열악한 생활환경과 시설의 획일성

피해자 보호시설의 생활환경은 열악하다. 입소자들은 좁은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하며, 전술한 비공개 시설로서의 특성이 더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시설 입소를 회피하거나 입소자들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활에 있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각자의 개인이 좁아도 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최소의 공간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작고 비좁다 보니까, 동물들도 협소된 공간에 집어 넣으면 서로 할퀴고 뜯고 상처가 나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서울/퇴소자)

지금 저희가 쉼터를 이전을 해서 한방에 5명, 그러니까 거의 이불도 못 펴서 이렇게 붙여서 밀착 그 정도, 그러니까 그나마 아이들하고 같이 온 분들은

그 방을 하나씩 별도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혼자 오신 분들은 이제, 예전에는 28명까지 있었어요, 한방에. (서울/퇴소자)

특히 자녀를 동반한 입소자의 경우 쉼터의 환경이 입소에 상당한 제약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일정 연령 이상의 남아가 동반 입소할 수 없는 문제나, 어른과 달리 열악한 생활환경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상황 등이 작용하고 있다.

애들은 난데없이 그냥 오밤중에 엄마 손에 이끌려서 어디 낯선 곳에 와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살아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밑도 끝도 없는 규칙 지켜야 되고 친구들하고 이별식도 안 했는데 전학해야 되고 전화기도 못 써야 되고, 애들은 못 쓰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애들은 아버지 전화 기억하고 있고 할머니 보고 싶으면 전화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불쌍하죠. (서울/종사자)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성의 전화에서 큰애가 이미 12세가 넘었기 때문에 혼자 청소년 쉼터를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아이를 혼자 청소년 쉼터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된 입장에서 그랬을 때. 제가 물렀어요. (서울/퇴소자)

그런 경우는 가족 쉼터에서, 거기는 큰 아이들도 남자아이들도 다 갈 수 있고, 저희는 단기 쉼터니까 단기 쉼터에는 남자아이들이 조금 큰애들 오기가 힘들죠. (사회: 그런데 가족 쉼터가 숫자가 많지는 않죠?)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가기 힘들어요. (대구경북/종사자)

최근에는 보호시설 입소를 원하는 인구집단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부부폭행을 당한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지만, 최근에는 미혼 입소자, 피해자와 함께 입소 하고자 하는 성인자녀 혹은 부모폭력에 노출된 비혼자녀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간에 관계에서 생기는 일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전체적인 입소자를 보면 미혼인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3명이 있는데 이번 주에도 2명이 더 요청이 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개인사정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완전히다른 거예요. 프로그램도 정말 이렇게 엄마들이 얘기하는 소리, 같이 집단을해도 엄마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서울/종사자)

그런데 비혼자들이 쉼터 당연히 워낙 폭력에 대한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가정폭력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생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기혼자도 그렇지만 비혼자들이 되게 취약한 위치에, 왜냐하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쉼터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오게되는 것 같아요. (서울/종사자)

일반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기혼여성 외에 미혼자 혹은 비혼자, 성인자녀 등 다양한 폭력피해자들을 함께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들이 호소하는 문제의 결이 다르며, 시설이 절대적으로 공동생활을 요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술한 것처럼 일정 연령 이상의 남아의 경우 별도의 청소년 보호시설로 옮겨야 한다는 이유로 가정폭력피해자가 입소를 꺼리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물론 가족보호시설이 있긴 하지만, 전국 66개 시설 중 20개 시설에 불과하다.

시설의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는 이처럼 한편으로 시설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다양한 인구집단을 고려한 시설이었는 상황에서 그나마 입소 가능한 시설에서는 개인의 공간이 전혀

없이 공동생활을 해야 하며, 이 때문에 '전형적인' 가정폭력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생활상의 불편이 더 커지거나 입소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후술하겠지만 시설의 획일성과 다양성의 문제는 전술한 비공개 시설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피해자 개인마다 가해자에 대한 노출 위험의 정도가 다른데, 그 정도를 사정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 3) 자원의 부족

시설의 생활이 열악하다는 문제와 동전의 양면처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지원의 부족이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대개 사회복지법인 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이 설치한 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에 따라 운영의 폭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하겠다. 물론 운영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다 보니 민간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출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민간의 재원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 다 보니 지역적 격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술한 시설의 생활상의 열악성을 논외로 하면, 가정폭력피해자와 종사자들이 밝힌 시설의 자원 부족 요소로 가장 큰 것은 인력의 부족이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인력 부족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기존 인력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전문성의 공백 문제와함께 취사 등을 책임지는 인력의 부재로 피해자들끼리 '당번'을 구성하여 생활을 책임지며 나타나는 문제였다. 특히 입소 중 단기근로를

하는 이용자의 경우, '당번'의 의무는 다른 이용자들의 양해를 얻더라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심리적인 치유가 필요한 분들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꾸준히 개별상담이, 집단상담치료도 도움이 되지만 개별상담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담하는 선생님들의 역량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데는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것을 받을 수도 있고 어디서는 그냥 이것을 내가 왜 하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서울/퇴소자)

그리고 쉼터에서 거기 운영해 주시는 그 선생님들이 생활상담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볼 적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생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상담사가 한 사람이 상주해 있어야 한다. 그래 서 그분들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담을 다 받아서 케어해 주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대구경북/퇴소자)

힘들게 아픈 기억을 잊지를 못하고 늘 그냥 눈만 뜨면 앉아서 얘기하는 게 그 아픈 과거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과거를 가슴에 묻어두고 혼자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당번을 맡아서 다음식을 준비해야 할 때는 그게 사실은 보기에는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보여서 다들 저렇게 참 아픈 마음을 지고 왔는데 여기 와서 당번 일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그거에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 (대구경북/입소자)

다음으로 많이 제시된 지원 부족 문제는 의료비와 생계비이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회복 필요성'과 '경제적 자원의 박탈'이라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이다. 의료비의 경우 '가해자의 추적 위험'이라는 맥락과도 연관되는데, 입소 후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번호가 병원에서 원활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지적되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검진 오면 건강검진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갈 때 초기에는 다 일반으로 해요. (수급자 확인 때문에) 그리고 전산이(전산번호를 의미) 너무 늦게 나와요. 한 달 반. 두 달 걸리거든요. (대구경북/종사자)

시설이 다 부담하잖아요. 그것은. 그게 왜냐하면 그냥 의료보험에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넣으면 8,900원만 주고 하면 되는데 일반으로 하면 28,000원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나가지 아니 할 돈이 의외로 나가잖아요. 그럼 그 돈이 빠지게 되면 나중에 누군가 치료를 해 줘야 되는데 시설에서 그 의료비가 줄어들잖아요. (대구경북/종사자)

생계비의 경우 아동교육비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기준에 맞추어 지원된다는 점에서 의료비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이다.10) 그러나 전반적인 운영비와 의료비 등 필수적 비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 몸만 달랑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돈도 지원해 줘서 직장을 잡을 수 있게끔 그런 뒷바라지까지 섬세한 부분까지도 조금 책임을 져주시면 그 사람들이 마음도 힘든데 더 힘들지 않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구경북/퇴소자)

동반아동에 대한 지원 역시 기관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현재 초·중·고생에 대한 일정한 교육비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입소자들은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유아의 경우 분유, 기저귀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어 비용 부담 때문에 유아동반 피해자의 수용이 불가

<sup>10) 2019</sup>년 기준 매월 252,812원.

96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복지 지원 방안 연구

했던 경우마저 있다.

제가 올해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OO이가 9개월이고, 5살이고 4살이고 8살이에요. 그런데 9개월 아이가 들어오면 우윳값, 기저귀값이 엄청 들잖아요. 생계비 걔 앞으로 나오는 게 한 달에 28만 5,000원이던가 그렇게나와요. 그런데 우유 한 통에, 요즘 다 우유 좋은 거 먹여요. (중략) 그거 다어떡하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안 돼요. 보건소에서도엄마가 분윳값은 지원 안 된대요. 왜 분윳값 지원 안 되냐? 기저귀 보건소에서 딱한 번 지원해 준대요. 왜 분윳값 지원, 모유 먹이면 되잖아요. 답이이거였어요. 모유 먹이면 되는데 왜 분윳값을 지원하라고 합니까? 이거였어요. 내가 어이없어서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그런 거를 말해도 되나요?뭐 이런 시스템이 이래요? 정말 내가 어이가 없었어요. 모유 안 나오는 엄마는뭐 어쩌라고. (대구경북/종사자)

이와 같은 예산의 제약 속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역시 제한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은 환경과 기존 자립지원제도의 부정합에 대한 논의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4) 공공-민간 협업의 어려움

전술한 것처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민간시설이다. 민간에서 설치했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이 크게 좌우된다. 이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관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 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맥락을 형성한다. 그러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비공개 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공기관과의 협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여기도 이제 사람이 바뀌잖아요 (정책이 또 바뀌었군요)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으로 이것을 지원을 하니까 거기는 잘 아는데 범죄피해.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자꾸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맞춰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중략) 그리고 서류를 자꾸 빽을 시키니까 구청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주민센터에서도 우리에게 그 지역에 가서 하라. 그러면 가해 자가 있는데 가해자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대구경북/종사자)

또한 민간시설로서 피해자 보호시설이 가진 부족한 자원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이용 가능한 정책들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수혜 가능한 정책을 연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가해자 추적의 위험과 비공개 시설이라는 맥락은 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훈련, 보육,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와 같은 한계가 나타 나고 있다.

(직업훈련) 기관에서 협조를 잘하면, 예명을 쓰잖아요. 예명에 대해서 잘 지켜지는데 그게 안 지켜지는 데가 또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관하고 잘 연락을 해서 했는데 그 담당자가 그런 것을 자꾸 실수하는 바람에 왜 지금 신분증 안 가져 왔냐? 신분증 내놔라 그러면 교육은 받고 가자면 아. 죄송하다. 못 갖고 왔다고. 내일 갖다 드리겠다고. (서울/퇴소자)

"퇴소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퇴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노출 염려가 있으니 결재자는 저로 그냥 놔 두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어쨌든 시설수급자이기 때문에 얘가 종일반이 가능했는데 얘가 퇴소를 했기 때문에 시설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일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가 지금 아직도 3개월이라는 시간을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서울/종사자)

우리가 입소를 하게 되면 전산번호가 나오잖아요. 원래 수급자들은 전산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 바로 전산번호 입력해서 의료보험을 적용 받아요. 비수급자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전산번호를 내는데 기간도 많이 걸리지만 갖고 와서 그것을 가면 접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의료보험공단을 여러 번전화했으면 의료보험공단에는 이 부서 바꾸고 이 부서는 저 부서 바꾸고하루 종일 부서를 돌려요. 그래서 끝내는 해결 안 돼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시스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병원에 가요. 또 같이가서 어쩌고저쩌고 쳐 봐라. 엔터를 쳐 봐라. 안 돼요. 그럼 이분은 결국은 어때요? (대구경북/종사자)

물론 '민간시설'이라는 맥락이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 간 분절성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제도 간 연계가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경우 민간시설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 간 연계와 통합성을 보장하는 것은 민간기관인 보호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들이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통합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공공정책의 몫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 5) 지역적·기관별 차이의 발생

피해자 보호시설이 민간시설로서 정부지원에 의지하여 운영되지만 자원의 부족을 겪고 있다는 점은 이들이 민간의 자원을 동원해야 할 필요를 증가시킨다. 실제로 많은 시설이 다양한 민간의 자원을 동원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간 자원은 지역에 따라,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는 시설 운영의 차이, 나아가 피해 자의 처우 차이로 이어진다.

지역에 따라 그 쉼터의 그게 지원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경기도 쪽은 좀 약하다고 해서 진짜 있는 그 금액 갖고 저희들이 생활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서울 쪽은 되게 여유가 있고, 그 부분은 지역적인 편차는 없어야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래야지 거기서는 정말 어떤 부분을 어떤 곳에서는 후원이 없거나 이러면 거의 운영이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들도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서울/퇴소자)

물론 접점에서 상황에 따른 운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요소이다. 사회서비스가 지역맞춤형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차이가 지역 특성의 반영이 아닌 절대 적인 자원의 차이로 나타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지, 또한 어떤 기관으로 연계되었는지에 따라 상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실제로 시설 대상의 설문조사에 서도 응답한 60개 시설 중 3개 기관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6개 기관은 취업연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고, 16개 기관은 주거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이상 2018년 기준). 또한 직업 훈련, 취업,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운영 지침 이나 방식, 지원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임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클 것이다. 결국 경제적 자립지원 관점에서 직업훈련, 취업연계, 주거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어떤 기관에 머무 르는지'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처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시설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하여 지역에 따라 입소자가 직업훈련 이나 취업에 나서는 상황에서 또한 차이가 발생한다.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입소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직업훈련 시에도 이동거리가 길어 교통비 등과 관련한 추가적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무거나, 지금 아르바이트니까 내가 얼마라도 해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다 보고 있는데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곳이 많고 알바 자리 자체가 거의 없어요. 편의점도 알바를 안 구해. 다 사장님이 해요. 그리고 저희도 쉼터가 안에 있기 때문에 막차가 7시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르바이트 구하는 데는 밤 10시나 9시에서 12시 사이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맞아요. (중략) 도시 쪽에 계신 분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알바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여건이 안 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알바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니까 조금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런 것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게 너무 안 되니까 (대구경북/입소자)

## 6) 보호기간의 제약

현행 제도하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대상의 위기성과 자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술한 것처럼 시설 입소 결정에 동반자녀의 연령·성별과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지원의 폭을 지나치게 좁히는 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단기는 최대 1년, 장기는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기간이 피해자가 자립의 기반을 갖추는 데 충분한 기간인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소 직전 경제활동이 상당 기간 단절된 사례가 많은 피해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11)

<sup>11) 2017</sup>년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62%는 입소 전 전업주부였다(여성가족부, 2017a).

이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로부터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시스템이 우리가 1년은 진짜 부족해요, 하다 보면. 그래서 계속 해도, 지금 우리가 스스로 퇴소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상담도 해 주고 직업훈련도 계속 연계해 주고 찾아주고 이런 것을 하지만 이게 주거지원으로 가든 아니면 퇴소를 해서 자립을 하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게 돌봄이, 어떻게 돌봄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관계가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을... (서울/종사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관에서 퇴소자에 대한 집단상담이나 직업훈련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상당수 피해자들은 퇴소하고도 취업이 여의치 않거나,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제한된 기간으로 인한 부담을 갖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 같은 경우 쉼터는 주거지원이 안 되는 쉼터였어요. 굳이 들어가려면 추천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 그래서 남하고 살기에는 좀 불편하고, 쉼터 생활을 1년 넘게 했는데 엄청 힘들어 했었어요. 나오니까 되게 편해 졌어요, 성격도 더 밝아지고 지금 현재 3개월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독립적인 공간에서 저는 아이를 키우고 싶었고요. 일단 그것은 좋은데 월세가 45만 원씩 지금 직장 그만둔 상태에서 내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서울/퇴소자)

얼마 전에 나왔는데 OO 쪽으로 신청, OO이면 솔직히 너무 멀어요. 학교 공부하는 애도 그렇고 차가 없으면 저게 안 되거든요. 너무 머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자리 잡고 살다 다른 동네 가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고. (대구경북/퇴소자)

굶지 않을 정도, 그냥 제 기본적인 생활만 할 정도, 아직은 그래요. 제가 주거지원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혼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친정의도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직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제 기본적인 생활하는 것 정도, 대출금 갚고 이런 거 하면서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대구경북/퇴소자)

올해 도입된 자립지원금 제도는 이런 면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하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수혜 가능한 인원이 기관당 1~2명가량으로 제한되고 있어 기대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 3. 환경적 맥락과 자립지원제도의 부정합

앞서 직업훈련과 취업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자립지원제도가 가정 폭력피해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시하였다. 본 항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 과정을 '입소 중 지원'과 '퇴소 후 자립'의 두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환경적 맥락과 기존 자립지원제도가 부정합을 보이는 부분을 조명하고자 한다. 비록 부분적으로 앞서의 설명과 중복 되겠지만, 이를 통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욕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입소 중 지원 단계

# 1) 취업과 직업훈련의 경합

가정폭력피해자에게 훈련기회가 제공됐을 때 왜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가를 질문했을 때 가장 먼저 돌아온 대답은 경제적 필요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취업은 장기적인 자립 의 방안이기도 하지만, 당장의 필요를 해소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취업이 전자로 자리매김할 때 직업훈련은 취업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지만, 후자로 자리매김할 때 직업훈련과 경합하는 요인이 된다.

현재 생활이 힘든데 바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걸 하는 게 낫지 교육훈련 1년짜리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받고 이런 게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시면. (서울/ 종사자)

저는 전에 지금 있는 동안에 저기가 왔다가 며칠 있다가 가신 분이 있는데 당장 내가 돈을 벌겠다지 직업훈련 받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시던데 요. 내가 당장 160이든 180이든 200이든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언제 배워서 내가 돈을 버냐? 이렇게 생각하시던데. (대구경북/입소자)

일단은 돈이 더 중요하니까요. 직업훈련은 언제 될지 모르고 막연함이고. 경제활동은 바로 돈이 들어오니까. 성과가 바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 아닐까 싶네요. (대구경북/퇴소자)

자녀를 동반한 경우 돌봄비용의 문제는 취업과 직업훈련의 대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아이를 돌보는 데는 양육비 교육비 등의 비용이 소요되고, 기관에서 지원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이가 있는데 저는 생활비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쨌든 쉼터에서 모든 지원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비가 양육 비가 필요해요. 그럼 이 사람은 바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아르바이트 선택하는 거예요. (서울/종사자)

취업과 직업훈련이 상충되는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경제적 자원과 무관하게 '활용'할 수 없다는 경제적 자원 박탈 상황, 그리고 시설에서 기본적 숙식은 제공되지만 보육, 생활, 교육 등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주어지지는 않는 기관의 자원제약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기관이 예산제약 상황에 있다는 문제는 보육비나 생계비 문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예산을 통해 직접적으로도 훈련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 2) 예산제약

현재 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에서 직업훈련 참여에 대한 횟수 제한 이나 프로그램당 액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직업훈련 예산의 총량은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훈련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제안을 해서 사실은 많은 활동가, 시설에서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계속 얘기했던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얻어낸 것이 액수 제한 없고 횟수 제한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느 정도 선에 교육만 가겠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차가 있고 예산 배정이 다르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한은 없어졌지만 제한이 있어지는 어떤 예산 때문에 (서울/종사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올려요.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조금 올려서 내잖아요. 의미 없죠.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올려서 보내도 그 예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시와 여가부에서 본인들이 정한 걸로 그냥 내려, 우리가 아무리 올려도 한 번도 반영된적이 없어요. 올라가는 거 없고 그냥 깎아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대구

#### 경북/종사자)

예산제약하에서 훈련비 집행과 관련한 대응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서울지역에서 인터뷰에 응한 기관들의 경우 출석률 80% 이상만 지원한다는 규정이 예산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훈련참여자가 자비로 먼저 훈련비를 부담하고, 출석조건을 만족한 경우 훈련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운영되는 것은 지자체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자원이 없는 피해자들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나타낸다. 일부 시설은 자체 운영비를 활용해 선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 기도 했으나, 이는 기관 운영비의 부담을 초래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안 갖고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냥 빈 몸으로 정말 다급하게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개인이 갖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직업 훈련 자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먼저 지불하고 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가지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서울/퇴소자)

그게 나중에 후불로 주고 선금으로 주고 이거보다는 시설에서 이 대상자들을 좀 보면서 조절할 수 있게 그것도 그냥 허용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만나보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도 굉장히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먼저내야 되는데 10만 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있었는데 직업훈련을한 번도 못 받았어요. (서울/종사자)

수료증을 줘야 구청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다가 중단하고, 비싼 교육을 몇 백만 원씩 내고 하다가 중단하고 퇴소해버리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내주다가 이것을 바꿨어요, 규칙을 본인이 먼저 내고 수료증을 받아오면 구청에서 이쪽으로 넣어주는 걸로. 그런데 어머니들이 5만

원도 없고 10만 원도 없고, 어떤 거는 이런 거 하는 거랑 양장기능사는 거의 400만 원 돈이거든요. 2만 얼마 빠지는 400만 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쉼터 후원금으로 먼저 주거든요. 쉼터 후원금으로 먼저 줘요. 그러면 어머니가 안 하고 나가셨어. 그러면 수료증이 없으니까 쉼터에서 후원금 몇 백만 원이 엄청 큰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펑크가 나는 거죠. (서울/종사자)

(기초)지자체마다 이게 좀 다른데 예를 들면 50% 정도 다녔으면 저는 수강증 받아오라고 해요. 그리고 들고 가서 제가 구청하고 얘기했어요. "알지 않냐? 우리 400만 원이면 CMS 후원자가 몇 달을 내야 된다.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았어요. 저희는 미리 다 받아요, 반쯤 진행했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지자체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지자체가 주는 데도 있어요. 이게 동네마다 너무 달라요. (서울/종사자)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훈련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1인 1훈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은 자비로 추가적인훈련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점 역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정도에 따라 훈련참여 기회가 제약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네, 제가 이제 (두번째 훈련 참여의 비용부담을) 해야 되죠. 그런 것이 좀 불편한데, 그런데 돌아가는 사정도 사실은 그렇게 넉넉지 않더라고요. 쉼터도 여러 식구를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많은 돈을 해 줄 때는, 제가 할수 있으면 제가 뭐라도 해서 제 것은 제가 나머지는 해나가야 되죠. (대구 경북/입소자)

산모관리사는 여기서 두 개는 안 된다고 해서 요양보호사는 여기서 지원했고 산모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구경북/퇴소자)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총예산 부족 때문에 상대적

으로 비용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 참여를 포기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제한된 예산 내에서 형평성을 기하다 보니 개별 피해자의 사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쉼터에서 한 번 해 줄 수 있는 그 금액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가정폭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경제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하물며 거기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직업 훈련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일부분 만약에 60만 원 정도는 지원은 해 줄 수 있는데 그 이후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500만 원 정도, 300만 원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퇴소자)

이 사람이 요양보호사를 땄는데 사회복지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니까 컴퓨 터를 또 다시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가폭 상담을 받게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세 가지 한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쪽으로 가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사람이 세 가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보고 하는데 굉장히 조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중략) 한 명한테 한 번밖에 기회는 없잖아요. 그렇게 예산이 많지가 않으 니까 이 사람한테 몰빵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종사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젊은이들이 들으면 미용 같은 것도 참 괜찮거든요. 40대도 미용도 괜찮고 이런데 미용이 돈이 많이 들고 단계가 많잖아요. 그러면 초기 단계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중급이라 이렇게 가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게 되면 그것을 다 못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인 거죠. (대구경북/종사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의 대다수가 경제적 자원의 박탈 상태에 있다 보니 식비와 교통비 같은 교육 부대비용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현행 제도하에서도 훈련참여 시의 교통비를 비롯한 부대비용은 1인당 월 10만 원 한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비를 반드시 훈련생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운영상의 어려움도 제시되고 있다. 물론 교통비를 기관으로 일괄 지급할 경우 교통비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본인계좌로만 지급하는 방식은 정합성이 떨어진다.

저도 OO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훈련 받으러 멀리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교통비가 없어서 그만둬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재료비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양장기능사 자격증 이런 거 받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재료비조차도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돈은 없고. (서울/퇴소자)

어쨌든 직업훈련을 받고 뭘 하고 있는데 저 같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오는 사람들은 그것도 물론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1년 후에 나가려면 내가 공부만 지금 1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이외에 점심값이라든가, 학원 다닐 때 학원에서 점심을 주지는 않거든요. 점심값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게 이왕이면 보조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같이 외진 곳에 있는 분들은 전혀 내가 스스로 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구 경북(입소자)

저희 차비는 10만 원 정도를 지원 받았는데 아직 제가 내 이름으로 나왔다는 그런 것까지 제가 수령은 안 했는데 제가 혹시 통장이 차압되는지 안 되는지 공과금이나 이런 게 다 연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 요금이라든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꼭 본인 통장으로만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받았다는 증거만 있으면 본인의 꼭 통장, 그 계좌로만 안 넣어줘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대구경북/입소자)

훈련예산의 문제는 아니지만 기관의 운영예산 부족이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시간'을 제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훈련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당번' 제도다.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는 취사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배정되지 않으며, 이에 시설은 입소자들로 하여금 당번을 정하고 식사와 청소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대 개의 시설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식사와 청소 당번은 참여자들이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나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나마 식사당번이니까 쉼터에 회원들이 많은 경우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 돌아올 수도 있고 15일에 한 번씩 돌아올 수 있고 이런데 거기는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에 또 막혀서 일을 못 찾는 거예요. (서울/퇴소자)

1인 1방 다 주고 사실 미혼이든 기혼이든 그런 갈등의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시설들은 취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당연히 당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하는 기본적인 거를 왜 못해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피해여성들이 와서 되게 온전하게 그 피해를 극복 하거나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하고 이런 데 어떤 생활의 조건, 어떤 삶의 조건들이 필요하느냐가 마련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서울/종사자)

## 3) 안전상의 고려

훈련지원 예산의 제약은 사실 정부예산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쉽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장기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예산증가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단기적인 해결은 쉽지 않다.

사실 직업훈련과 관련된 비용지원에 있어서는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한다.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할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훈련비가 지원되며, 월 최대 116,000원까지 훈련장려금을 수급해 교통비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자산조사(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은 100% 이하)라는 관문이 있기는 하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역시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다면 훈련비가 전액 지원되며, 훈련장려금뿐만 아니라 훈련참여 지원수당이 월 최대 284,000원까지 지원된다. 아직 제도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내년부터 도입될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유사한 혜택 제공이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추적 위험' 때문에 '비공개시설'에 입소한 상태라는 점이 이들이 이와 같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정부기관의 프로그램에 등록할 경우 가해자의 추적이우려되는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 점이 현행정부지원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 의료기관의 불인지로 인해 실제 활용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은 있으나 – 시설 입소 시 배부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지만 훈련기관이나 훈련 관련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쉼터에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계좌제 같은 게 있어서 오히려나가서 계좌제를 선택해서 제가 공부하는 것을 하면 거기서 지원이 되기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쉼터 자체에 있으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그러냐면 노출 때문에 그게 안 된 거예요. (서울/퇴소자)

지금 취성패나 아니면 내일배움카드 쪽에서 한부모 자녀나 한부모나 또는 다른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으로서 지원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도 사회에서 위험성이 낮으신 분이 내일배움카드로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지원 받지 않고 일반 실업자로 등록하셔서 진행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물어봤어요. 가정폭력이 카테고리가 없는 거예요. (중략) 네. 개인정보가 등록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거니까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정보접근의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정보를 되게 민감하게 다루는 어떤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던가 이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이 프로그램을 이용 하기 힘들다. (서울/종사자)

(내일배움카드제 이용 관련) 쉽지는 않아요. 저희도 이번에 하려고 했더니 쉽지는 않아요. 진짜 위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서울/종사자)

그렇다고 내일배움카드제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프로그램이 전혀 이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기존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상담. 훈련비 지원에 비해 이 제도들의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 위험을 감수하고 활용하거나. 시설에 따라서는 활용을 유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른 시설들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이 제도들의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제도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편이다.

이게 입소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든다면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이 집요하게 찾아오는 거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찾아서 이분들은 이 드러나는 것들이 굉장히 어딘가 나를 뭔가를 내 이름 석 자와 주민번호 쓰는 자체가 두려워요. 그렇지 아니하고 거의 감정의 골들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폭력이 일어나서 오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너하고 나하고 이혼하자. 이런 정도 이렇게 하면 사실은 내가 드러난다 해서 남편이 나를 그렇게 찾기나 애절하게 나를 붙잡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노출이 되는 것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대구경북/종사자)

(내일배움카드 등) 저희는 그래서 그것은 저희는 한 번도 안 했고, 저희는 지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출이 안 되게 그 기관에서 잘하신다 하시는데 일단 저희는 노출 부분을 되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염려가 있다면 저희는 그것은 하지 않아요. (대구 경북/종사자)

네. 저는 일반 실업자로 해서 고용보험센터에서 200만 원 구직자 카드로 (노출이 안 돼요? 조회하고) 괜찮아요. 남편은 막 그거 추적하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중략) 구직자 카드로, 내일배움카드로 어떤 뭐 했던 사람은한 명도 없었대요. 제가 최초이다 보니까 다 몰라서 제가 발로 뛰어다니고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뭐가 있는지 상담도 4차에 걸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입소자)

물론 기관에서 본인의 희망 및 피해자의 위험 정도를 판단하고,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에게는 기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위험 정도 판단'에 대한 체계화된 기준이없이 시설 종사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숙련된 종사자의 '감'은 체계화된 기준 이상의 암묵지일 수 있겠으나, 시설에 따른 기준 차이가 과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체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방식의 운영으로는 여전히 '위험 정도가 높은' 피해자가 내일배움카드제나 취업성공패키지와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실질적인 위험의 정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다.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전산관리번호 지급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12) 등을 활용하는 것은 이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신분노출 관련 위험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은 취업성공패키지나 내일배움카드제뿐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 후련시설 등과 관련해서도 — 정도는 덜하지만 — 제기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종사자들은 매우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금 취성패나 아니면 내일배움카드 쪽에서 한부모 자녀나 한부모나 또는 다른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으로서 지원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도 사회에서 위험성이 낮으신 분이 내일배움카드로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지원 받지 않고 일반 실업자로 등록하셔서 진행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물어봤어요. 가정폭력이 카테고리가 없는 거예요. (중략) 네. 개인정보가 등록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거니까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정보접근의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정보를 되게 민감하게 다루는 어떤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던가 이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이 프로그램을 이용 하기 힘들다. (서울/종사자)

지금 현재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지금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좋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도 작년에 프로그램 하면서 직업훈련 특화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하다가 온갖 것 다 조사하고 뭐 하고서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가정폭력피해여성으로서 그것을 활용해도 안전한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서울/종사자)

학원에 가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전화 회원 분이시다 이러시는데

<sup>12)</sup>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은 불만을 토로하였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적 하는 방식은 가족관계부 등 공식적인 문서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 가족관계부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sup>&</sup>quot;이것들도 사실은 이것만 해도 굉장히 바꿔만 준다고만 하면 뒷자리, 어디 가서든지 빈 번호로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안 나타는 걸로, 이게 내가 바꾸면 가족관계등록부도 자동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서울/퇴소자)

약간 꼬치꼬치 묻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 회원 분은 뭘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식이고 아니면 하기도 하고 되게 이분이 드러날까 봐 조금 걱정도 되고요. 주민번호를 그대로 써도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많이 들고, (중략) 무엇보다 그런데 드러나는 게 많이 걱정이 되고요. 주민번호를 그대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그런 게 좀 많이 고민 (대구경북/종사자)

안전상의 고려는 취업 단계에서도 중요한 제약이 된다(신나래, 2017). 특히 사회보험 가입이 필요한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건강보험 취득에 관한 통보가 주소지로 가게 되는데, 이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노출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물론 사업장의 협조를 얻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 아예 (법적 의무인)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있는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경우가 많다.

4대 보험 들지 말라. 세금은 내라. 그러면 사실은 요즘 4대 보험 안 드는 업소가 없거든요. 저도 알바 식당에서 해 봤고 옷집에서도 알바 해 봤어요. 그런데 그 알바 하는 사람도 다 신고를 해야만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업장을 신고 위반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가서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쉼터에 들어가 있으면서 고용노동부의 4대 보험들어가는 것들을 위반하는 업소를 찾아 들어가고 그것을 만드는, 조장하는 거예요. (서울/퇴소자)

의료보험공단하고 가정폭력쉼터에서 계시는 분이 취업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해 주면 된다. 저희들이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그 시설장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취업한 기관에 전화를 한 번 했어요. 그고지서를 받는 것을 사업장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체크하면 되거든요. 거기에들어가면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어려워요. 해 주십사했더니 안 해 준대요. 거절해요. (대구경북/종사자)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원래 상주에 있는 집 주소를 당겨서 저희 집으로 옮겨 놓은 거죠. 취업을 시키려고 하면 취업을 진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모든 서류는 득실이 저희 쪽에 서류를 받는 거죠. 그분의 모든 서류는. 그렇게 해서라도 취업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시켜서 직장을 다니게 합니다. 직장을 다니게 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퇴소를 했죠. 퇴소도 하고. 그게 직업훈련 하는 것도 돈을 많이 줘서 많이 시켰으면 좋겠는데 하고 나면 사실은, 예전에는 요양보호사 4대 보험 안 들어도 됐거든요. 원치 않는다면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대구경북/종사자)

취업성공패키지나 내일배움카드제 이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취업 시 사회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시설에 따라 다른 방침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시설 종사자들의 '감'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거 판단해요. 이 어머니가 노출. 상담해 보면 감이라는 게 오잖아요. 있어요. 아무튼 실무자가 느끼는 촉이 있는데 그냥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퇴직금도 안 되고 실업급여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나이 먹으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저는, 보통 쉼터들이 그런 거 못하게 하는 부분 있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하라고 그래요. (서울/종사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허용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4대 보험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어디 직장을 다니시게. 그러니까 기존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남편이 그 직장을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4대 보험이 되는 다른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4대 보험이라 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종사자)

### 4) 취업/훈련지원의 비체계성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보호시설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시설의 중요한 역할로 받아들이고, 입소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훈련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요구와 상황, 중고령 여성 노동시장 상황과 같은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담들 많이 하죠, 많이들 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어떤 것에 관심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뭘 원하는 삶, 나의 삶이 어떤 삶인지 계속 상담하고, 그러면 어떤 것들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응대를 하고, 선택하게 하고, 그것이 설사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해 봐야일단 좋은지 아닌지 또는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 그런데만일에 어떤 프로그램 3개가 있으면 이 프로그램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나의 직업 관련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인가? 약간 장단도 같이 평가해 보고, 그러면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나한테 최선의 선택은 뭔가? (서울/종사자)

처음에 무작정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이 취업훈련 받으시는 것을 보고 서로 막 받고자 하시는데 우선은 좀 기간을 두고 봐요. 이분이 어떤 욕구가 있으신지, 처음에는 분명히 빵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또 지나면 "저 바리스타 할래요." 그러시는 분도 있고, 한 2~3개월 정도는 지켜보면서 이분이랑 지속적인 상담을 한 다음에, 아니면 워크넷에서 하는 심리검사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 상담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분이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냐?" 그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분이 정말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다시 확인한 다음에 제가 학원 정보를 알아보고 이러이러한 학원이 있더라 그래서 직접 학원에 방문해서 이분이 이 학원에 대해서 받는 느낌이나 그런 게 있으면 여기가 괜찮다. (대구경북/종사자)

그러나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들은 직업상담의 전문가가 아니며,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노동시장이나 고용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시설에 따라서는 여성 인력개발센터와 같은 기존 여성 대상의 고용서비스 기관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직업훈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선택하거나, 막연한 기대로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프로그램정보 부족 및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식조리사 준비를 했었어요. (왜 울며 겨자 먹기였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제일 그게 취직하기도 쉬울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공서나 어린이집, 말 그대로만 되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 다 이렇게 줄이 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서울/ 입소자)

주로 거기 선생님들이 추전해 주는 것을 하던가 (중략) 그래서 많이 받게된 거지 제가 원하는 것을 한 것은 운전면허하고 그 다음에 포토샵 정도이런 거 외에는 없었던 거고 다른 거는 그냥 (중략) 제가 이렇게 너무 갇혀지내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추천해 주는 쪽으로 그냥 (서울/퇴소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많이 이용하지. 가깝게 있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노출이 안 되면, 저희도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면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일반학원보다는 오히려 그럴때가 나을 수도 있어요. (서울/종사자)

전단지나 이런 것 갖다 주시고 어디 뭐 이렇게 배울 만한 거 있으면 갖다 주시고 알선해 주시려고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구경북/퇴소자)

취업을 연계하는 것은 직업훈련 연계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다. 전술한 대로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한 노출 문제도 있거니와 기본적으로 중고령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구직과정은 오롯이 피해자 본인의 몫이 되는 경우도 많으며, 기관에 머무는 동안취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용직 일자리로 제한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가서 했는데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물 한 잔 먹을 시간도 없고 밥을 앉아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개인시간도, 그러니까 휴식시간이 일체 주어지지 않고 몸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기계적인 움직임을 해야만, (중략) 그러니까 이게 4대 보험 못 들어요라는 말과 동시에 그쪽에서는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업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서울/퇴소자)

아르바이트는 길게는 못했고요, 전부 다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많으면 식당 아르바이트는 외식업 중앙회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제가 구하면 다음 날 바로바로 되는 그런 걸로 (대구경북/ 퇴소자)

저희는 취업연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중략)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는 본인들이 다 찾아오세요, 이 부분은. (중략) 저희가 직접 찾아서 매칭해 주고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원칙적으로는 저희 안에 있을 때할 수 있는 일이 어차피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립, 독립 후에 자립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직장을 얻는 게 아니고 알바 개념이라서 그렇게 까지 저희가 그렇게 관여하지는 않아요. (대구경북/종사자)

직업훈련이 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를 온전히 가지고자 하면 결국 취업으로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가정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훈련은 그 자체로 회복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후의 경제적 자립까지를 고려한다면 취업으로 이어질 필요가있다. 하지만 현재 시설에서의 직업훈련이 이후 취업으로의 연계까지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 보니 훈련의 효과가완전히 발휘되기 어렵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안전상의 고려를 이유로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종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할수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요리사 자격증을 따잖아요. 그게 취업이 잘될 것 같아서 따고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만 막상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 경력에서 밀린대요. 거기도 나이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주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너에게 맞다 적합하다고 하지만 취업했을 때는 여러 이유에 의해서 또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웠지만 그걸 가지고 취업까지 연관되는 게 거의 많다, 잘된다, 직업 해서 자립에 성공까지 갔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긍정적인 퍼센티지를 파악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조금 의심스럽고 (대구경북/종사자)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의 경제활동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정보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는 궁극적인 자립을 위한 중요한 훈련과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경험이 적은 중고령 여성이 대부분인 가정폭력피해자의 상황에서 이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이나 지원 없이 이 과정들을 수행해 나가기는 어렵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에 있다가 나왔을 때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회생활 계속 하시는 분은 정보가 계속 있지만 우리는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정보를 약간씩 이렇게 이런 좋은 조건에 있는 뭐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창업을 만약에 준비하게 된다면 대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상식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화 돼서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대구경북/퇴소자)

### 5) 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 선택지의 제한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 보호시설 종사자들이 고용서비스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개별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존 프로그램 이용이 안전상의 문제로 제약된다는 점 등은 결국 대다수의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중고령 여성 노동시장'이라는 맥락 속에서 결정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요컨대돌봄서비스 제공이나 요식업 등 저숙련 서비스업 일자리와 그 일자리에 맞는 훈련만이 주어진 선택지가 된다는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연령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취업하기 전에 직업 훈련을 시킬 때 본인의 욕구도 저희가 파악을 해요. 뭘 배우고 싶냐?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폭이 넓어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선택의 폭조차가 좁아요. 여성이 직업훈련을 받겠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자체가 좁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40대부터는 할 수 있는 게 (돌봄 노동이나 외식산업) 네, 그 외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구경북/종사자)

그리고 직업훈련에 그게 제한이 되게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나이와 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연령뿐만이 아니라 직업을 선택할 때 4대 보험 되는 데를 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딱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던 데요. (서울/퇴소자)

예산 때문에 액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경제적 자립의 척도가 이게 취직으로 연결되는 것, 사실 그게 시설 종사자들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어떤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운영실적에 교육훈련 받은 사람 보고 취직한 사람 보면. (서울/종사자)

물론 통계적으로 볼 때 해당 연령대에 속한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가 다양한 선택지를 갖기 어렵다는 것은 냉엄한 현실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일을 해 온 이력이 있고, 전혀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하에서 이처럼 개별적인 적성과 희망을 고려한 커리어 설계나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39세 이상 직업 다니다가 단절된 사람들, 육아하고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그리고 39세의 아주 적극적인 여성 이렇게 해놓은 거죠. 해서 그러면 나는 가능한 건가? 면접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불가능하게 얘기하셨어요. 연령이 높다. 그럼 연령이 높은 사람은 이것을 못하는 거냐? 기회가 없는 거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 (서울/퇴소자)

어느 정도 방안이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그냥 방안은 마련해 놓고는 있어요. 전문점 창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는 금액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구경북/퇴소자)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몇 가지 업종을 제외하면 성차별, 연령 차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는 훈련을 마치고 취업하는 단계에서도 어려움으로 나타나는데, 취업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취업하더라도 저소득 직종으로 국한되어 실질적인 자립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움이 있다.

네,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연령 제한이, 취직을 하려면 연령 제한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서울/입소자)

그래서 선택의 폭이 일단 없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하고자 하는 나의 욕구 아니면 나의 연령, 취업 이런 것을 고려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범위 자체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거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직업훈련을 마치고 밖에 나가서 퇴소를 하고 직업을 가지잖아요. 일단 그걸 가지고 직업까지 연결해서 성공하신 케이스가 많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하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그걸로 생활이 안되세요. (대구경북/종사자)

봉재 쪽에서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월급이 좀 적더라고요. 되게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키워야 되고 이러는데 월급은 적고 이래서 다른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봉재가 좋기는 하지만 생계유지까지는 되게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분도 지금 주거지원에 계시는데 주거지원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조금 많이 힘들어서 (서울/종사자)

# 6) 사회적 자립을 위한 중간단계

앞서 가정폭력피해자의 상황 중 하나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용기를 내 취업이나 훈련에 나서더라도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취업을 내보내면 한 일주일 지나면 그만두고 다시 와요. 분석을 해 봤더니 "남편은 뭐 해? 어디 살아?"이거 물어보잖아요. 이거 질문 받는 순간 안나가.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주인이나 사장님이나 동료들이 "빨리 빨리 좀 해."이렇게 말하거나 약간 이렇게 푸시하는 것 같으면 폭력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서울/종사자)

이는 물론 피해자들이 자립을 위해 감내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극복의 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 현재 피해자들이 직면하는 '보호와 회복을 위한 쉼터'와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 사이에 이들이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중간단계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시설의 경우 일종의 공동작업장을 설립하고, 이를 피해자들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삼고 있다. 이와같은 공동작업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비가 급한 입소자들에게 돈 벌 거리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같은 이런 위치에 있는 여자들이 나이 제한, 뭐 제한, 밖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가정 얘기도 하게 되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그러다가 나중에 다 병이 드시는 거예요. 혼자서 애를 키우고 육아 하며 키우고 케어 다 하다 보니까 먹고도 살아야 되지.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보셔서 우리 그 쉼터 안에서 사회적 기업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획 중이신데 (서울/입소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을 하는 전문가나 정말 제대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구청에 팀장이, 여성정책과 팀장님이 되게 여성복지적인 곳에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저희가 되게 판매활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은 5명이라도 40만 원, 30만 원씩 가져간다는 게 한 달에 이게 엄청나요. 왜냐하면 재료비도 썼으니까 엄청 많은 매출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원을 하면, 그러니까 가정폭력피해여성 아니면 취약계층여성의 공동작업장을 통한 자립,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저런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서만 훈련을받아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기가 원했던 직업을 찾아가는 중간단계인 거예요. (서울/종사자)

#### 나. 퇴소 후 자립 단계

# 1) 주거지원 제한

시설에서 퇴소한 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주거지원이다(공미혜, 2017). 주거에 대한 부담은 시설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때 겪게 되는 가장 뚜렷한 차이이기도 하고, 일정한 목돈(보증금) 및매월 발생하는 비용(월세) 부담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는 거주지역이 어디인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가정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주거지원을 보면, 국가·지방자치단 체·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 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받고 있으며, 그 밖에 시설이 민간에서 자원을 확보하여 제공하는 주거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퇴소 후 주거지원을 받는 이들은 주거지원의 부족, 지원받는 주거지의 환경 문제, 주거지원 기간 제약, 주거지원 시에도 발생하는 비용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만일 딸이 저한테 온다고 그러면 6개월 이상 쉼터에 있으면 주거지원을 바로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쪽의 그 주거지원이 방이 나와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단점은 뭐냐 하면 경기도 쪽에 주거지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서울시내 쪽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입소자)

저 같은 경우 쉼터는 주거지원이 안 되는 쉼터였어요. 굳이 들어가려면 추천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 그래서 남하고 살기에는 좀 불편하고, 쉼터 생활을 1년 넘게 했는데 엄청 힘들어 했었어요. 나오니까 되게 편해 졌어요, 성격도 더 밝아지고 지금 현재 3개월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독립적인 공간에서 저는 아이를 키우고 싶었고요. 일단 그것은 좋은데 월세가 45만 원씩 지금 직장 그만둔 상태에서 내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서울/퇴소자)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주거지원 해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이혼이 된 상태이고 아무것도 없어야지만 가능해요. (다른 참가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1년에 공고가 두 번 뜬대요.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서울/퇴소자)

그리고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 편차도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쉼터들한테 회의 가서도 얘기하는 게 적극적으로 자원 개발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울/종사자)

아무래도 집 문제겠죠. 주거, 일단 월셋방을 얻더라도 어쨌든 보증금을 가져야 되고, 방만 얻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이불이라도 필요 126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복지 지원 방안 연구

하겠고 기본적인 것은 다 필요한 게 있으니까 (대구경북/입소자)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 다 살고 있잖아요. 애들하고 나인데 주거지원을 받으면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2년이나 4년이에요. 그런데 집 구하는 일이 4년 만에 퍼뜩 어떻게 얻어지고 그렇지는 잘 안 되거든. 공공주택이나 그것을 한다고 해도 그게 금방 뽑힌다는 보장도 없고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봐요. (대구경북/퇴소자)

주거지원에 대한 현황 파악 과정에서 두드러졌던 특성은 동일지역이라도 기관마다 제공하는 주거지원이 다르고, 기관 종사자들이 어떤지원제도가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제공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또한 기관 지침으로 특정한 주거지원은 피해자들에게 안내 자체를 하지 않거나 하는 식의 판단을 내리는경우도 있어 피해자들이 어떤 시설에 있는지에 따라 주거지원에 대한이해나 제공받는 서비스의 편차가 상당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 계시는 분, 주거에 계시는, 그럼 주거만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거 든요. 그럼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담을 해요,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담당 선생님하고 상담하는데 그때도 마찬 가지였어요. 그 선생님들도 몰랐어요. (대구경북/퇴소자)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래요. 우선은 주거지원은 이런 어떤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받고 나면 주거지원까지는 이게 안내를해도 되는 사람, 안해도 되는 사람이 이 다음 단계에 파악이 되기 때문에이 훈련에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주거지원 안내를 안하고 있어요. 아예 안하고... (대구경북/종사자)

대부분 주거지원은 엄마들이 시설에서 안내를 받고 했기 때문에 시설 가까이에서 지내고 싶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자기네들하고 이렇게, 좀

자기네들을 이렇게 의지도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LH를 이렇게 이용하지 않았어요. (대구경북/종사자)

주거지원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제시된 문제는 지역의 제한성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학교나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주거지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에 나왔는데 OO 쪽으로 신청, OO이면 솔직히 너무 멀어요. 학교 공부하는 애도 그렇고 차가 없으면 저게 안 되거든요. 너무 머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자리 잡고 살다 다른 동네 가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고 (대구경북/퇴소자)

주거지원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주변에 출퇴근 거리 안에서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거기를 가겠지만 제가 보는 주거지원 받아서 가시는 분들은 조금 멀리 가셨거든요. 그때 그 지역에, 그쪽 가까운 지역에 자리가 아예 없었던 거죠. (서울/퇴소자)

물론 자원의 제약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피해자만을 위해 주거지원을 무조건 확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가정폭력피해자가 자체적으로 주거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기간을 두고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갚아 나갈 수 있는 힘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퇴소자)

#### 2) 지원의 연속성

보호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시설의 특성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연속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앞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또한 취업이 쉽지 않은 노동시장 약자의 비중이 높다는 입소자들의 특성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문제로, 1년여의 보호기간만으로 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온전히 자립하기가 쉽지 않으며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공미혜, 2017).

실제로 기관들은 퇴소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고, 주거지원 대상이 아니면 관리 역시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소자 대상으로 연속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더구나 주거지원 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종사자들의 업무로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들은 이에대해 향후에는 쉼터보다 개별적 주거지원과 공동 프로그램이 결합된형태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은 주거지원에 갔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아이도 있고 이 어머니가 꼭 주거지원에 입주할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니까 주거 지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지원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담당 실무자 인건비도 보전 안 돼요. 점점 연차가 올라가면 자부담이 엄청 올라가요. 그런데 이분이 이 어머니들을 상담하려면 맨날밤에 가야 되거든. 어머니들 들어올 때 가서 가족회의도 하고 어머니들이랑밤에 만나서 밥도 먹어야 되고 밤에 만나서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데 같은한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시간외 수당도 안 줘. 그러니까 처우개선비 그런 것도 없어. 저희가 이거 다 자부담해요. (서울/종사자)

주거지원이 주거는 존재하되 공용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 어떤 형태로 지향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서울/종사자)

장기적으로는 쉼터 자체의 다양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사회적 약자로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면밀 하게 고려해 기존의 제도들이 퇴소 후에도 적용되는 방식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부모 아동에 대한 지원이나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들은 이혼이 완결되지 않았어도 배우자와 이미 가해자-피해자 상황으로 배우자의 경제적 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 임을 고려하여 조정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에서 나온 상황에서도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들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부모 가정도 신청하려면 기간이 있으니까 이게 보통 3개월 해야지이게 어쨌든 되든 안 되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시설을 나갔다고 해서 종일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리고 봐 주고 이렇게되는 거예요. (서울/종사자)

그런데 만약에 2년 후에라든가, 2년 후에는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보면 대부분이 동사무소나이런 데 가서 알아보면 한 달에 10만 원씩만 저희가 저축을 하면 나라에서 몇 프로 보조를 해 주고 얼마씩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신청을 하러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폭으로 간 거잖아요. 가폭으로 갔는데 그 사람의 재산하고 저희하고는 별개인데 (서울/퇴소자)

#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현재 입소자와 퇴소자) 및 종사자 대상의 FGI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경제적 자립지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들이 처한 환경적 맥락이 어떤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의 환경적 맥락이 현재의 자립지원제도와 어떻게 부정합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표 4-4〉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환경적 맥락

주제	범주	하위범주
	직업훈련의 의미	회복의 수단
		경제적 자립의 기회
경제적 자립지원의 의미와 욕구	취업의 의미	회복의 수단
7/17/71		(궁극적인) 경제적 자립의 기회
		긴급한 경제적 필요 해소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황적 특수성	중고령 여성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우선성
		경제적 자원의 박탈
		가해자의 추적 위험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
가정폭력피해자의 환경적 맥락	시설의 특성과 제약요인	비공개 시설
₹7 <b>6</b> 7 7 7		열악한 생활환경과 시설의 획일성
		자원의 부족
		공공-민간 협업의 어려움
		지역적·기관별 차이의 발생
		보호기간의 제약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있어서 직업훈련과 취업은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임과 동시에 직업훈련과 취업 과정에서 정서적· 사회적 회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취업의 경우 여기에 더하여 긴급한 경제적 필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가정폭력피해자는 대부분은 중고령 여성으로 노동시장의 약자이면서 돌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설에 입소하는 시점에 이들 은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상태이며, 경제적으로는 본인의 원래 능력과 무관하게 자원을 박탈당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들은 가해자의 추적 위험 속에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위축되어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이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시설이다. 그러나 시설의 생활환경은 열악하고 피해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민간시설로 정부지원에 의지하지만 자원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지역적으로동원할 수 있는 자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설 입·퇴소를 둘러싸고 서비스의 분절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시설과 피해자의 이와 같은 특성은 현재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이 적절하게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과 부정합을 나타낸다. 입소 중 지원 단계에서는 '경제적 자원의 박탈'이라는 피해자 특성과 '자원의 부족' 이라는 시설의 특성이 맞물려 취업과 직업훈련의 경합이 나타난다. 직업훈련의 예산제약 역시 동일한 특성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가해자로부터의 추적'이라는 피해자 특성과 '비공개 시설'이라는 시설의 특성에서 비롯된 '안전상의 고려'가 기존의 노동시장 프로그램 이용을제약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이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표 4-5〉가정폭력피해자의 환경적 맥락과 자립지원제도의 부정합

단계	부정합
입소 중 지원	취업과 직업훈련의 경합
	예산제약
	안전상의 고려
	취업/훈련지원의 비체계성
	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 선택지의 제한
	사회적 자립을 위한 중간단계
퇴소 후 자립	주거지원 제한
	지원의 연속성

'중고령 여성'이라는 피해자 특성과 '민간시설'이고 '자원의 부족'이 존재한다는 기관의 특성은 취업이나 훈련지원의 비체계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위축'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은 '사회적 자립'을 위한 중간단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자원의 부족', '열악한 생활환경', '보호기간의 한계'라는 시설의 특성은 '주거지원의 제한'이나 '지원의 분절성'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의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의 개선방향은 이와 같은 부정합에서 출발해야 한다. FGI 과정에서 놀라웠던 점은 직업훈련 프로 그램 자체에 대한 불만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직업훈련을 둘러싼 맥락들, 즉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과 직업훈련 참여 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직업훈련을 선택하고 참여하기 위한 공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주로 지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직업훈련은 취업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의미 외에 정서적·사회적 자립의 과정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훈련까지 가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는 것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어지는 5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장·단기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제5장

# 가정폭력피해자 경제적 자립지원 개선 방안

제1절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방향 제2절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제3절 향후 연구과제

# 제5장 가정폭력피해자 경제적 자립지원 개선 방안

# 제1절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방향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체계의 개선은 앞서 제시한 피해 자의 환경적 맥락과 기존 자립지원제도의 부정합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부정합이 발생하는 각각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장·단기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다시 ① 취업 및 훈련참여 저해요인 제거, ②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선, ③ 보호시설 및 행정 인프라 개선, ④ 장기적 자립지원의 네 가지 테마로 분류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정책 제언

구분	정책 제언
취업 및 훈련참여 저해요인 제거	공공기관 이용 및 공공서비스 제공 시 전산관리번호 활용 확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자산조사 기준 변경
	돌봄 지원 개선
	공동작업장 지원
	훈련수당

구분	정책 제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선	직업훈련 및 고용 연계 과정 체계화
	정보제공 확대
	직업훈련 프로그램 종류 확대
	훈련지원 체계 개선
	온라인 프로그램 활용 인프라 마련
	시설 생활환경 개선 및 다양성 확보
보호시설 및	보호시설 종사자
행정 인프라 개선	보호시설-공공기관 간 협조체계 개선
	경제적 자립지원 평가기준 조정
	민간 영역 관련 기관의 인식개선
~~~~~~~~~~~~~~~~~~~~~~~~~~~~~~~~~~~~~	장기적 커리어 관리체계 마련
자립지원	주거지원과 자립지원금

# 제2절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 1. 취업 및 훈련참여 저해요인 제거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약 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경제적 자립과 충돌하는 문제는 이들이 자립을 시도하는 맥락 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들이 공식적으로 소유한 경제적 자원과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자원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점 또한 고려가 필요하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다수가 중고령 여성이며, 정서 적·사회적 자립을 필요로 한다는 점 또한 이들이 자립에 나서는 맥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 가. 공공기관 이용 및 공공서비스 제공 시 전산관리번호 활용 확대

현재 가정폭력피해시설 입소자들은 시설 입소 시 부여받은 전산관리 번호를 활용하여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의료지원이 필수적인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나 기존 건강보험 등을 활용함으로써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을 덜기 위한 조치기도 하다. 그러나 동일한 위험을 안고 있는 다른 공공서비스 및 공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이 충분히 활용 가능한 기존 공공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다.

특히 경제적 자립지원의 맥락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신원노출의 위험 없이 내일배움카드제나 취업성공패키지, 그리고 내년 도입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 피해자들의 자립을 제약하는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활용은 시설에서 지원해야 할 훈련비용을 전액이 아닌 본인부담금으로 제한함으로써 시설 입장에서 현재의 예산이 확대되지 않더라도 훨씬 많은 피해자들에게 직업훈련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훈련장려금, 구직촉진수당, 참여수당 등 공공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부가된 수당을 수령함으로써 훈련 관련 부대비용 부담을 덜고, 단기적 소득 확보를 위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훈련참여에 제약을 받지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전산관리번호 활용 확대를 통해 고용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및 노동시장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안전상의 고려에 대한 부담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고용 및 훈련과정 선택에서의 비체계성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고용연계나 직업훈련 과정 선택은 시설 종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정보 속에서 개인의 경력이나 적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고용센터나 여성인력 관련 기관을 연계한다고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훈련이나 취업 관련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종합적 고용 프로그램은 노동시장 약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커리어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 자립 단계별로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시설에서는 시설 종사자의 개별적 판단 및 각 시설의 서로 다른 지침에 따라 신원노출의 위험을 감수하고 내일배움카드제나 취업성공 패키지를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결정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개개인의 위험도를 고려한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판단은 다소간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위험도가 높은 피해자들은 공적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위험도 판단의 자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판단기준을 매뉴얼화할 필요도 있겠지만, 좀더 근본적으로는 안전보장과 경제적 자립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소할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공공기관 및 공적 프로그램 이용 시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하도록 하는 조치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자립이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취업 시 발생 하는 신원노출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는데, 특히 사회보험 가입 일자리 취업 시에는 노출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물론 사회보험 취득 관련 정보가 원주소지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소이전을 한다거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인정보 열람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경험적으로 여러 행정적 프로세스의 한계 속에서 안전상의 위험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또한 시설에 따라 서로 다른 방침 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안전보장이 최우선 과제인 가정폭력피해자의 상황상 방어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설과 입소자 모두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아야 할 피해자가 취업할 경우 사회보험 가입 사실을 비롯하여 여러 행정적 정보의 노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보호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해자 본인이나 경우에 따라 자녀를 내세워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더라도 피해자의 경제 활동이 신원노출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할 때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법적 의무인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을 찾아다니는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

#### 다. 자산조사 기준 변경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의 상당수는 자산조사를 동반하는데, 자산조사는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전술한 것처럼가구 구성원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가 아닌 가해자·피해자 관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 점은 일반적인 가구단위 자산조사가 이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들은 본인의 경제활동 이력이나 재산과무관하게 경제적 자원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많다. 현재 시설에 대한 지원 중 입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약칭:「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이든 아니든 수급자에 해당하는시설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이와 같은 특성을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생계비 이외에도 이와 같은 고려는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의료비 지원이다.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은 가장 절박한 욕구중 하나인데,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니면 의료급여를 받을수 없고, 본인의 건강보험을 그대로 활용해야 하는데, 신원노출 위험이 있다 보니 시설에서는 상당히 큰 비용을 의료비 지원에 지출하게 된다. 게다가 수급자 여부를 파악하는 데 1.5~2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이라수급자 여부가 파악되기 전까지는 모두 비수급자로 전제하고 지원하게 되기도 한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에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시설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일반적인 자산조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준하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자신의 '실질적인 경제적 상황'에 맞는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은 의료비 지원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 지원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 자원을 재배분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자산조사의 핵심목적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현재의 열악한시설 상황을 고려할 때 시설에 입소 중인 이들이 부정수급을 목적으로하거나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한 이들의 실질적인 자원 동원 능력은 대부분의 경우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때 이들이 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간만이라도 자산 조사를 예외로 하는 것은 그 논리적 타당성이 충분하다.

의료비 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고용·복지 지원, 주거지원, 자산형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난다. 의료급여 대상자든 아니든 의료비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자산조사제도에서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의 자산이나 피해자가 현재 접근할 수 없는 자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실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자산조사에 있어서 가정폭력피해자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자'를 되도록 많은 제도에 지원대상으로 별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전술한 전산관리번호활용을 포함한 지원 프로세스를 분명히 한다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돌봄지원 개선

돌봄에 대한 필요는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이 중·장기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활동보다 당장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아르바이트에 나서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또한 기관 입장에서는 보육과 관련된 별도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육이 필요한 연령의 아동이 있는 피해자의 동반 입소를 주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상당수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돌봄에 대한 지원은 체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포함하여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퇴소 시 전일제 돌봄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같은 행정적 조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마. 공동작업장 지원

사례조사에 참여한 일부 시설은 자체적으로 공동작업장을 마련하여 봉재, 공예 등 시설 내에서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통해 일부나마 경제 적 자원을 확보하고, 피해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정서적 좌절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 입소자들이 자기효능감을 회복하여 정서적 자립으로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노동시장에 나가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전 중간단계로 사회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입소기간 중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급한 경제적 필요를 해소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직업훈련과 같이 당장의 경제적 필요와 충돌하지만 장기적인 효용이 큰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공동작업장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입소자들의 평가 역시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마케팅이나 영업 등 기업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원 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기관들의 대다수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 작업장 마련을 강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바. 훈련수당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훈련비용 부담뿐 아니라 교통비·식대·교재비 등의 활동비용, 훈련참여로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됨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발생시킨다. 이 중 기회비용의 문제는 가정폭력피해자뿐 아니라 훈련을 필요로 하지만 당장의 생계를 잇기 위한경제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저소득층 대다수가 겪고있는 문제기도 하다.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훈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저소득·취약계층의 상당수가실업급여 수급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내일배움카드제 등 공적 지원제도를 통해 훈련을 수강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훈련참여자는 훈련장려금(월 116,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참여수당과 구직촉진수당을, 내년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상의 이유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해소할필요가 있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는 자산조사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크게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실질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국의 고용안전망은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이지만, 도입 시 수급인원을 35만 명 정도로 보고 있으며, 기간도 6개월에 불과 하여 현재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 불 확실하다. 따라서 제도 간 연계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는 있겠지만, 중·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훈련수당을 좀 더 광범위하게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선

앞서 설명한 바 있지만 사례연구 과정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욕구는 놀랄 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물론 직업훈련 참여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두드러진 나머지, 훈련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의 정도와 방식, 프로그램 선택 과정, 프로그램 유형 등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가. 직업훈련 및 고용 연계 과정 체계화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직업훈련의 선택 및 고용연계 과정은 전적으로 종사자들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 보호시설 종사자 들은 반복적 상담을 통해 입소자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과 훈련기관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상당수의 기관 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고용 관련 인프라를 연계하여 적성검사 등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이 체계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보호시설 종사자들 역시 고용서비스나 직업상담의 전문가들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자의 개별적 사례를 고려한 사례관리나 커리어 관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입소 중 취업의 경우는 직업훈련보다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입소자가 알아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경제적 자립의 두 축이 취업과 직업훈련이라고 할 때 어떤 일자리에서 어떻게 일하며 어떤 훈련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선택은 입소자의 개인적인 적성, 희망, 경험, 주변 환경, 노동시장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될 때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당장 고용 및 직업 관련 전문가를 시설에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기존의 고용 관련 인프라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제도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술한 제도적 제약의 해소 — 안전상의 문제 예방 — 뿐 아니라 고용 관련 기관의 중사자들이 가정폭력피해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보호시설과 고용 관련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기준 마련 및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 나. 정보제공 확대

훈련 프로그램 선택과 마찬가지로 시설에서 고용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는 체계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비공식적인 노력에 의해 제공된다. 그렇다 보니 입소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개인 차이가 클뿐 아니라 기존 입소/퇴소자들의 경로를 따라가게 되며 — 물론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기도 하지만 — 주로 저숙련 서비스업 일자리와 관련된 영역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보호시설 종사자의 대부분은 가정폭력이나 여성 관련 전문가이지 취업이나 훈련 전문가가 아니며, 따라서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도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취업 및 직업훈련뿐 아니라 주거지원 영역에서도 나타나는데, 실제로 FGI 과정에서 같은 지역의 A시설종사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B시설 종사자는 알지 못해 대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13) 또한 기관에 따라서는 기관 종사자의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선별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는 선의에 의한 것이었지만, 입소자로서는 선택의 가능성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가'에서 언급한 고용 관련 기관과의

<sup>13)</sup> 물론 어떤 시설의 개별 종사자가 모르는 정보라고 해서 시설 전체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계적 협력망 구축 외에 지역단위로 가정폭력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고용/훈련/주거 관련 제도나 정보를 요약·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설에 비치 가능한 팸플릿 형태나 시설에서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 형태로 이를 구축할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퇴소자 모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얻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공개 시설로서 정보의 제약이 존재하는 보호시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도움이 될 것이다.

#### 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종류 확대

현재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수강하는 대부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음식조리, 돌봄, 바리스타 등 저숙련 서비스업으로 국한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중고령 여성 노동시장의 현실적 제약으로부터 시작되는 문제이지만,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 종류에 대한 제약은 제도적 차원과 실질적 차원에서 모두나타난다. 이 중 실질적 차원은 기관의 정보 부족, 프로그램 선택의비체계성, 노동시장의 제약이라는 앞서 설명한 환경과 제도의 부정합문제들의 귀결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제시한 프로그램 선택 과정의 체계화 및 정보제공의 확대는 이를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사정(assessment)하고, 이에 따라 경력을 설계한 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제시할 것이다.

제도적 제약은 직업능력개발의 성격이 낮은 검정고시, 평생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에서 발생한다.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실질적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및 진학교육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인 직업훈련과 달리 가정폭력피해자에 직업훈련 참여는 치료와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취업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교육 자체가 갖는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는 직업 관련성이 낮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나 검정고시 등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라. 훈련지원 체계 개선

현재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훈련지원은 단가나 횟수에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예산의 한도가 있다 보니 실제 운영상에서는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지역과 같이 피해 자의 훈련비 선 지불을 조건으로 하고 수료 시 비용을 지원하거나, 대구·경북 지역과 같이 1인당 1프로그램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가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커리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훈련비용이 높은 프로그램 참여가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훈련 지원 예산의 제약으로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훈련비용 문제는 내일배움카드제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기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하다. 1차적으로 보호시설 입소자들이 신원노출 없이 내일배움카드제를 비롯한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훈련예산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와 같이가정폭력피해자의 훈련참여 시 자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훈련비용이 과도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접점에서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마. 온라인 프로그램 활용 인프라 마련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영역에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비중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은 비밀유지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상황과 정합성이 높으며, 특히 훈련시설이 주로 위치한 지역과 떨어져 있는 지방의 시설에서 필요성이 높다.

이에 일부 시설에서는 시설 종사자의 PC를 활용해 온라인 교육 프로 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 내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온라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PC와 인프라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수강할 만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시설들과 공유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3. 보호시설 및 행정 인프라 개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들이 입소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보호, 회복,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환경이 된다. 그러나 현재의 보호시설 상황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피해자의 다양성에 비해 획일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종사자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공공기관과의 협조체계 개선, 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 관련 평가기준 재검토, 관련 민간기관의 인식개선 등의 행정적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 가. 시설 생활환경 개선 및 다양성 확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및 퇴소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문제 중 하나는 생활환경의 열악함이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아동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적인 공간을 전혀 가질 수 없고, 안전상의 이유로 휴대폰 활용이 제한되며 통금시간이 있는 등 생활상의 제약이 적지 않다. 이는 피해자 본인이 겪는 어려움 이기도 하지만 동반자녀의 생활에서 더욱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설의 다양성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족보호시설의 부족으로 10세이상 남아가 있어 입소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으며, 미혼인 부모폭력혹은 파트너 폭력피해자가 입소한 경우 다른 피해자들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생활방식의 차이가 커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안전상의고려 필요성 정도도 피해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가해자가추적하기를 단념하는 등 가해자 추적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비공개 시설에 거주하는 것은 불필요한 불편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폭력피해자인 기혼여성의 공동생활시설'이라는 현재의 획일적인 보호시설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생활공간을 개선하여 일정한 개인공간을 확보할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연령, 가정폭력의특성, 가해자의 추적 정도를 고려하여 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공개/비공개 여부 역시 상이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위험 정도를 면밀하게 사정하여 결과에 따라 공개 시설과비공개 시설로 나누어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한국에서도 이처럼 다원화된 시설 구조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보호시설 입소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물적 인프라의 변화와 함께 초기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시설로 연계할 수 있는 상담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어떤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안전상의 고려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 나. 보호시설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는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호시설은 24시간 운영되는데, 이들은 긴 노동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도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종종 개인적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보증하거나 업무 외 시간에 퇴소한 피해 자들을 지원하고, 개인의 사회적 자본을 동원해 취업을 연계하는 등일반적인 임금노동자가 아닌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필요로 하는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고, 종사자들이 객관적 처우를 넘어서는 '헌신'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그 성격상 접점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 대면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수혜자의 만족도가 결정된다. 설사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노동자의 역량이 낮더라도 자본투자를 통해 산출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상품과 대면사회서비스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환경과 역량은 그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나아가 이들의 경제적 자립지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이들의 업무 종류와 양, 그리고 급여 수준과 노동시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원을 확충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보호시설에서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 관련 전문 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 교육훈 련과정에서 경제적 자립지원에 대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호시설 종사자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적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당번' 제도이다. 다른 시설과 달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시설 장과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어 보호시설 입소자들이 당번을 정하여 청소 및 식사 등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온전히 회복에 집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직업훈련이나

취업 등 입소 중 경제적 자립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입소자들 간 갈등의 원인으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시설에서 식사나 청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예산지원이 긴요하다.

#### 다. 보호시설-공공기관 간 협조체계 개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민간에서 설치하여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매우 일반적인 형태기도 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고용 관련 기존 프로그램이나 공공기관 인프라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정폭력피해자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또 다른 문제로 지자체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인지도가 낮다 보니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인식 수준이나 태도에 의해 지원이 좌우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동일한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해 전임자는 어렵지 않게 처리했는데, 후임자는 어렵다고 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보호시설과 공공기관 간 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가정폭력피해자는 신변보호의 필요성이나 가족의 경제적 자원 활용 제약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수적으로는 소수이며, 이들을 보호 하는 기관은 비공개 시설이다. 따라서 이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전달되지 않고, 현장 담당자가 알아서 파악하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아질 경우 안정 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부터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내용이나 신변보호 등을 위한 조치사항 및 시설과의 협조 프로세스 관한지침, 매뉴얼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지자체나 관련 공공기관에제시함으로써 현장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않고 매뉴얼에 따르도록 지원해야 한다.

#### 라. 경제적 자립지원 평가기준 조정

현재 한국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취업률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직업훈련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평가의 대상이기도 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역시 이와 같은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취업률이나 취업유지율에 근거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는 취업 외에도 정서적·사회적 회복의 통로가 된다. 또한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이들임을 고려할 때 취업률과 같은 양적 평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만족도나 자존감 향상과 같은 정성적인 평가에 상당한 비중을 두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마. 민간 영역 관련 기관의 인식개선

가정폭력피해자를 둘러싼 환경이 공공기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지원의 맥락에서 중요한 직업훈련기관이나 사업주들은 대부분 민간 영역의 행위자들이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거치게 되는 병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이러한 민간 영역 행위 자들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이나 이들의 법적 보호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공공기관보다 더 낮다는 것에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취업 과정이나 직업훈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결국 가정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문제로, 공공기관처럼 매뉴얼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나 훈련기관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이해, 제출 가능·불가능 서류에 대한 이해 등이 가능하도록 홍보하고 계도하기 위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4. 장기적 자립지원

가정폭력피해자의 어려움은 시설에 머무는 몇 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해소되지 않는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자립하기 위해서는 퇴소 및 퇴소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자립지원 체계는 입소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크고,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 가. 장기적 커리어 관리체계 마련

가정폭력피해자의 궁극적 자립이 결국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갖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이들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경력과 역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들 대부분이 중고령자로 노동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지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 초기에 이들의 연령, 희망, 적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영역에서 일 자리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개인화된 계획을 가지고 입소기간은 물론 퇴소 이후까지 계획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즉, 장기적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초기에 폭력을 신고하는 시점에서 부터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접점의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보호, 회복, 자립이라는 서로 다른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지속적인 관리가 퇴소 후까지 이어져야 한다.

### 나. 주거지원과 자립지원금

장기적인 커리어 관리체계의 마련이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방향이라면, 당장의 보호시설 퇴소자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주거와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지원이다.

가정폭력피해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이 부여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시설별로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시설에서 주거지원이 제공되는 것도 아니며, 지역 별·시설별로 지원의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모든 피해자에게 주거지원이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주거지원의 지역적 제한이나 동반자녀의 문제 등으로 인해 주거지원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 자체의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가정폭력피해자들이 필요로 한 것은 저리의 대출지원이다. 주거지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주거지원을 이용하더라도 퇴소 후기본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일정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상당수는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정작 퇴소 시점에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기존한부모가족 대상 지원에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가정폭력피해자도 적용가능하도록 특례를 삽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다양한 주거지원 및 자금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올해 도입된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 제도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주거지원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아무런 경제적 자원 없이 퇴소하는 대부분의 퇴소자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일정금액의 자립지원금이 갖는 의미는 크다. 다만 현재의 예산 수준은 시설당 연간 1~2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점진적으로 예산을확대할 필요가 있다.

# 제3절 향후 연구과제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취업 및 훈련참여 저해요인 제거,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보호시설 및 행정 인프라 개선, 장기적 자립지원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끝으로 향후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해 연구가 필요한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진행 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현황이 잘 파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시설에서 자립지원서비스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입소자들이 받은서비스의 양과 질이 어떠한지, 퇴소자 대상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했다. 향후 시설별 자립지원서비스 현황을 정례적으로 파악하여 통계자료화한다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으나, 각각의 유형별로 어떻게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지까지는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피해자 유형별 자립지원 방안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가정폭력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과 이를 위한 방안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했으나, 그 범위가 넓다 보니 일부 과제에서는 구체화된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 **SUMMARY**

# A Study on the Employment, Welfare and Training Service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Jaewook Nahm, Bom-I Kim, Narae Shin

The term "domestic violence" ranges from spousal violence, parent-child violence to violence against the elderly. This study focuses on the spousal violence, as a result of gender-power relations. Considering the most of victims of spousal violences are women, this study can be regarded as a literature on women abused by family violence.

One of the feature of the domestic violence is its repetitiveness. Abused women, however, are not able to terminate and break free due to fear of revenge, responsibilities of children, and difficulties of economic independence. Economic independence plays the core role as it is used as a means to control and dominate women by male abusers. Due to the traditional gender division that has been socially built, women's economic status locates inferior to that of men's,

which leads women not being able to terminate the circle of violence.

Hence,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status of abused women as a part of supports of their independent living. Although protections and supports are being provided according to the relevant regulations in South Korea, there are still challenges. It is often pointed out that the supports mainly focused on institutionalized women, lack of budgets, low qualities of vocational trainings, and not enough types of vocational trainings have rooms for improvement.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vocational trainings, as a starting point for economic independence of abused women. Furthermore, womens may find psychological securities and expand social relations via vocational trainings. Comprehensive problems of related employment policies are also examined in this study.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the first chapter, the purpose and methods are provided. While the second chapter reviews pre-existing literatures and theories, the current state of abused women and policies on supporting independent livings are provided in third chapter. The fourth chapter includes abused women's interviews on the current relevant policies. And the final chapter suggests implications and future tasks. Theory study, surveys and focused group interview were used.

As a result of literature and theory review in the Chapter 2, what

independent living means for abused women are examin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s and theory study. Traditional gender division – male breadwinners and female housewives – as a social condition which leads to women's inferior position to men in the labor market prevents victims from breaking free. This fact differentiates abused women's "independence" from independence of general use, as for the victims it means the "process" of recovery from violence, including "escaping from economic shortage", "securing well-being as an independent person after fully separated from the abuser", and "being able to protect oneself", etc.

In the Chapter 3, the current state of the abused women and policies on supporting independent livings are examined. Surveys on the institutions for abused women's independent living (60 out of 66 answered nationwide) were execut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was inacted in 1997.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s in charge of counseling on medical and legal issues and operating institutions for victim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main programs run by 57 institutions were mostly service industry such qualification acquisition for as programs information-technology, food and cooking, care giver, coffee barista, driving license, nail art skin beauty and mother the newborn child care. It is suggested that expanded budgets and assured personal protections are urgent.

It is also found that the discontinuity of the government support and barriers such as mental trauma, risk of exposure of where she lives, and stigma, etc. prevent women from looking for jobs. Also, the fact tha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nsiders institutionalized women only as beneficiaries of vocational training expenses is another problem. Mothers who have sons or send children to school cannot be able to institutionalized, leaving them unprotected. The current support policies are required to be improved to secure victims' personal protection and rights not to go through disadvantages in employment. The system that relates jobs and childcare environment and safety is also required.

The Chapter 4 includes the Focus Group Interviews. Abused women by domestic violence (6 institutionalized, 12 formerly institutionalized) and 10 workers participated.

Mostly, abused women are in their middle-older age. married, with children. Children in need of care fuction as a barrier for abused women to live independently. It is also urgent that womens' recovery as they had been exposed to the long-term physical and mental violences. While many of them could not participate the labor market, a few who did also could not take control of economic decision making, taken by the abusers. They are still have fearful of abusers' chasing after them and intimidated when having social relationship as a result of violence even after institutionalization.

One of the biggest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s is that they are

not open to public. Though it is to protect the abused from the abusers, it also limits the women's actions. Womens cannot use mobile phones in their names, log-in their email accounts or use internet. Coming in and out of the institutions are also timebound. Poor conditions of institutions (small, narrow, boys not allowed) that often cause conflicts between womens are due to lack of 'insufficient supports'. Institutions for the abused women, mainly private are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The amount of subsidy depends on the region, causing regional gap. Workers are not sufficient, while many women have burdens of medical and living expenses. Limited period of institutionalization, one year to two years maximum, are considered not enough for women to be prepared for independent living. A 'rota' for food preparation and cleaning of womens as there are no staff designated for those chores also disturb them to attend vocational trainings or looking for jobs for economic activity.

FGI shows that few women express dissatisfaction towards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However, environmental factors blocking them from not participating, difficulties of independent living after participating vocational training, and disutilization of public resources for them to choose and participate in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were pointed out as problems.

In the Chapter 5, four policy directions for abused women's economic independent living are suggested: ① barrier factors of employment and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to be

removed, ②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programs to be improved, ③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s to be advanced, ④ women's long-term independent living supports to be developed.

For the sake of the victims' personal protection, utilization of computerized numbers and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need to be improved. It is recommended that means-tests done by a family unit be changed into by individual to support the victims' economic situation effectively. Organized care supports for women with children in need of care are necessary to be expanded. "Common workshops", which a few institutions are running, may be considered to be transplanted to other institutions. It is also suggested that extra expenses (expenses for transportation, meals and teaching materials, etc.) due to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be provided as a training allowances.

A system for vocational trainings to succeed to employment needs to be developed for the training programs to be improved, as now women's employment solely depend on their own decision, not the counseling of the experts. Active promotions for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expansion of program types are also required.

For better infrastructure of institutions, improvements of living conditions and various supports for womens' characteristics are necessary. Better working conditions for workers are also required.

Lastly, the long-term case management is necessary for women to

survive the labor market in the long run. Financial support for residence and independent living, which are women's current worries and issues, is also urgent.

# 참고문헌

- 공미혜(2017).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 후 삶과 도전: 부산지역 주 거지원사업의 주거공간 입주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7(2), 233~267쪽.
- 김소정(2018). 「아내학대와 피해여성의 빈곤화 그리고 우울」, 『한국사회 복지경영학회』、5(1), 1~27쪽.
- 김은영·윤민우·박선영(2013).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신체적, 감정적, 그리고 성적 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경찰연구』, 12(2), 49~78쪽.
- 김종숙(2015).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성과」, 『사회과학연구』, 22(4), 179-208쪽.
- 김주현(2008). 「가정폭력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271-297쪽.
- 류은주(2009).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생애사 연구: 자립과 자립 이후의 사회적응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6, 5~33쪽.
- 박언주(2010).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행동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 복지학』, 30(0), 323-346쪽.
- 박언주·김효정(2015).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노동경험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 연구』, 15(2), 71-106쪽.
- 박영란(2007).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피해자의 욕구와 피해자 보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여성학』, 23(3), 189-214쪽.

- 박영주(2017). 『대구지역 가정폭력 실태 및 대처방안 배우자 학대를 중심으로』, 대구여성가족재단.
- 서경남(201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자활지원현황 및 제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1차 가정폭력방지 월례 포럼 자료집.
- 서경남(2019).「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최소여성의 경제적 자립 실태 및 정책방향」, 『서울가톨릭여성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 서재인(2017). 『쉼터 30년 성과와 과제 '보호'에서 '자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의전화.
- 소숙희·최승아(2019).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여성의 경제적 자립 실태조사』, 서울가톨릭여성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문.
- 송아영(2017). 「가정폭력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50~59쪽.
- 신나래(2017).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취업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쉼터 거주여성의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9(3), 77-110쪽.
- 신나래·박언주(2018).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직업훈련 경험과 그 맥락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30(4): 29-60쪽.
- 신나래·이영수(2017). 「여성의 근로소득이 가정폭력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1), 23~39쪽.
- 양현아(2006). 「가정폭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젠더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1), 1-45쪽.
- 여성가족부(2017a). 『2016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실적』.

- 여성가족부(2017b). 『2017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 여성가족부(2018a).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여성가족부(2018b). 『2017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실적』.
- 여성가족부(2019).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월드비전(2016). 『2016 월드비전 사례집』.
- 윤자영(2018). 「젠더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월간 복지동향』, (233), 13-19쪽.
- 이인선·장미혜·황정임·이미정·주재선·정수연·조윤주(2017). 『2016 가정 폭력 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희연·박태정(2010).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연구』, 78(1), 159-200쪽.
- 정성미(2018). 「2018년 여성 노동시장 평가와 특징」, 『월간 노동리뷰』, 2018년 12월호, 83-97쪽.
- 정재훈·장수정·황경란·김기태·박지은·박은정·권민정(2013). 『폭력피해 경험여성의 경제적 자활지원 강화 방안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춘숙·이문자·이미혜·배인숙·박영란·황경숙(2008). 『여성주의적 가족 폭력쉼터 운영의 실제』, 한울아카데미.
- 정혜숙(2013). 「미국 한인 가정폭력피해 한부모 빈곤여성들의 자활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5(4), 245~269쪽.
- 조혜선(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경제적 자원, 성 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사회학』, 37(1), 91-115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 족부.

- 허민숙(2017). 『가정폭력 피해자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과제』, 국회입 법조사처.
- 홍정현·권현정·윤성인·이수정(2017).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가정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된 무기력과 사회적 지지,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중심으로」、『한국심리학회지: 여성』、22(1)、1~22쪽、
- e-나라지표 홈페이지. "가정폭력관련시설 운영 실적."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4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 가톨릭평화방송라디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인터뷰 "아산상 상금, 폭력 피해여성 자립에 쓸 것" http://www.cpbc.co.kr/CMS/n ews/view\_body.php?cid=703012&path=201711, 최종검색일: 2017. 11.28.
-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현황" www.data.g o.kr/dataset/15022590/fileData.do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http://www.m ogef.go.kr/cs/wvs/cs wvs f002.do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홈페이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안내." https://www.women1366.kr/\_sub03/sub03\_01a.html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 월드비전 홈페이지. "위기아동지원사업소개." https://www.helpchild.o r.kr/introduce/who-we-are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 f?popMenu=ov&csm Seq=685&ccfNo=1&cciNo=1&cnpClsNo=1 에서 2019, 9, 10, 인출.

-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http://hotline.or.kr/board\_notice/54577)에서 2019. 9. 10. 인출.
- Anderson, K. L.(1997). Gender, status, and domestic violence: An integration of feminist and family violence approach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pp.655~669.
- Bandura, 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Oxford, England: Prentice-Hall.
- Basile, K. C., Hall, J. E. & Walters, M. L.(2013). Expanding resource theory and feminist-informed theory to explain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by court-ordered men, *Violence Against Women*, 19(7), pp.848~880.
- Denzin, N. K.(1984). Toward a phenimenology of domestic, family violenc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3), 483-513.
- Dobash, R. E. & Dobash, R. P.(1979). *Violence against wives,* New York: Free Press.
- Gibson-Davis, C., Magnuson, K., Gennetian, L. A. & Duncan, G. J.(2005). Employment and the risk of domestic abuse among low-income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pp.1149~1168.
- Goode, W. J.(1971). Force and violence in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pp.624~636.
- Gracia, E. & Herrero, J.(2006). Acceptability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European Union: A multilevel analysi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0(2),

- pp.123~129.
- Hiroto, D. S. & Seligman, M. E. P.(1975). Generality of learned helplessness in m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pp.311~327.
- Kalmuss, D. & Straus, M.(1990). *Wife's marital dependency and wife abuse,* In M. Straus & R. Gelles (Ed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pp.369~379,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Kaukinen, C.(2004). Status compatibility, physical violence, and emotional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pp.452~471.
- Laing, L.(2017). Secondary victimization: Domestic violence survivors navigating the Family Law System, *Violence Against Women*, 23(11), pp.1314~1335.
- Macmillan, R. & Gartner, R.(1999). When she brings home the bacon: Labor-force participation and the risk of spousal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4), pp.947~958.
- Moe, A. M., and Bell, M. P.(2004). Abject economic: The effects of battering and violence on women's work and employability, *Violence Against Women*, 10(1), pp.29~55.
- Moore, A. M., Frohwirth, L. & Miller, E.(2010). Male reproductive control of women who have experienced intimate partner

-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 Medicine*, 70, pp.1737~1744.
- Rothman, E. F. and P. S. Corso(2008). Propensity for intimate partner abuse and workplace productivity: Why employers should care, *Violence Against Women*, 14(9), pp.1054~1064.
- Straus, M. A. & Gelles, R. J.(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New Brunswick.
- Tauchen, H. & Witte, A. D.(1995). The dynamics of domestic viole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5, pp.414~418.
- Villarreal, A.(2007). Women's employment status, coercive control,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Mexico,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pp.418~434.

# 부 록

〈부록 1〉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대상 설문 내용

〈부록 2〉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입소자 및 퇴소자, 종사자)

〈부록 3〉 FGI 반구조화 질문지

# 〈부록 1〉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대상 설문 내용

시설개요	_							
7) (1	(광역)	작치단체 기준 시	시	설	일반	· 🔲	가족보:	호 🗌
지역	설소	제시)	유	형		중경	상기 🗆	
입소정	병원	명	연중	입소인	[원(2018)			명
상근종사	자 수	명	연중	퇴소인	[원(2018)			명
자원봉사(1	바상근)	명	연	괄현원	2018)			명
1. 귀 시설에서는 지난 해(2018년)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u>직업훈련 프로그램</u> 을 운영하셨습니까? 운영했다면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으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음 □								
프로그램	_			참여	취인원(명)		직업훈련	건수(건)
(a) x) £	まが基立	- X-}			2			2
7 . 7		-10 -111 -1	. 7 = 27	7 11				
※ 간이	보자달	경우 추가하여 작	성해	수십/	<b>9</b> 오.			
1-1. <u>직업훈련 프로그램</u> 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운영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① 재원이 부족해서 ② 마땅히 운영할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③ 운영해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④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없어서 ⑤ 기타 ( )								

2.	귀 시	설에서는	지난	·해(2018년)	가정꼭	폭력피해자	에 다	H한 <u>추</u>	업알선	프로그	<u>.램</u> 을
	운영경	하셨습니까	<b>ት</b> ? 운	<b>은영하셨다면</b>	어떤	방식으로	취업	알선을	을 제공형	냈으며,	어느
	정도의	의 취업연기	계가	이루어졌습	니까?						

운영 여부	운영 🗌 미운영 🗌	
취업연계 방식	① 공식적 취업알선 기관을 통한 서비스 연계 ② 비공식적 친분이나 모임을 통한 알선 ③ 기타 (지원방식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
취업연계 실적	건수 ( 건) 인원 (	명)

- 2-1.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운영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 ① 재원이 부족해서
  - ② 마땅히 연계할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 ③ 운영해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 ④ 취업알선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없어서
  - ⑤ 기타 ( )
- 3. 귀 기관에서 지난해(2018년) 퇴소한 인원 중 <u>퇴소 후 거주지원</u>을 받은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이들에 대한 거주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임대주택 입주			명
(임대주택은 아니	지만) 거주지 알선		명
기타	지원방식 ( <i>지원방식</i> :	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
주거 관련 지원	지원인원 (	명)	

4. 귀 기관에서는 <u>기관을 퇴소한 분들의 취업활동이나 다른 형태의 정서적·경제</u> <u>적·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follow-up 프로그램</u>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며,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프로그램 내용	

	이용실적	
	프로그램 내용	
	이용실적	
	※ 칸이 모자랄 >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른
		램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며, 이
	용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프로그램 내용	
	이용실적	
	프로그램 내용	
	이용실적	
	※ 칸이 모자랄 >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5. 귀 기관에서 현	재 운영하고 있는 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떻
	게 평가하십니	까? 잘되는 점, 개선이 필요한 점, 애로사항 등에 대해 가급적
	상세하게 기입	해 주십시오.
	기시호기 기기	
	직업훈련 관련	
	취업알선 관련	
	주거지원 관련	

기타	

- ※ 칸이 모자랄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7.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향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이 있거나, 기존 프로그램의 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적 지원 및 조치가 있다면 자유롭게 기입해 주십시오.

# 〈부록 2-1〉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입소자 및 퇴소자)

##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복지 지원 방안 연구 연구 책임자명: 남재욱(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이 연구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는지, 현재 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가정폭력피해 경험으로 인해 전문상담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피해 경험을 가진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연계 등의 프로그램 현황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습니다.

##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가정폭력피해 경험을 보고하며 전문상담소, 단기·중장기 쉼터 및 주거지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15-20인의 여성과 피해시설 활동가 8-10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약 2시간에 걸쳐 연구원과의 집단 인터뷰

가 진행됩니다.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며, 이는 절대 외부로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안전하고 독립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원과의 인터뷰에 약 2시간가량이 소요될 것입니다.

#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말씀해 주 십시오.

# 6.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는 없습니까?

인터뷰 과정에서 과거의 폭력피해 경험을 회상하며 분노,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불쾌함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대답을 거절할 수 있으 며, 인터뷰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 불쾌감이 지속될 경우 전문가 상담 등 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 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 오.

#### 7. 이 연구에 참여 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경험에 대한 이해를 중진 시키고, 앞으로 여성이 원하는 형태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	끼	-?
----	------	----	----	-------	-----	------	---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남재욱 부연구위원 (000-000-0000)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 10. 이 연구에 참여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 시 교통비 등의 실비로 귀하에게 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연구 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공동 연구원 이름:	전화번호:
공동 연구원 이름:	전화번호:

# 동 의 서

-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
-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해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 4. 나는 인터뷰의 내용이 녹취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5.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 —	
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 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 0	

# 〈부록 2-2〉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종사자)

##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복지 지원 방안 연구 연구 책임자명: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이 연구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는지, 현재 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피해 경험을 가진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연계 등의 프로그램 현황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습니다.

##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가정폭력피해 경험을 보고하며 전문상담소, 단기·중장기 쉼터 및 주거지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15-20인의 여성과 피해시설 활동가 8-10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약 2시간에 걸쳐 연구원과의 집단 인터뷰

가 진행됩니다.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며 이는 절대 외부로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안전하고 독립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원과의 인터뷰에 약 2시간가량이 소요될 것입니다.

#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말씀해 주 십시오.

## 6.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는 없습니까?

인터뷰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정폭력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서적 불쾌함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대답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인터 뷰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 불쾌감이 지속될 경우 전문가 상담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워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 7. 이 연구에 참여 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앞으로 여성이 원하는 형태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a	여구에서	어으	모드	게이저ㅂ이	비민으	보장됩니까?
J.	고나	==		711 11 0 2 7	-1 = -	- T- 6 H - 1/1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남재욱 부연구위원 (000-000-0000)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 10. 이 연구에 참여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 시 교통비 등의 실비로 귀하에게 \_\_\_\_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연구 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공동 연구원 이름:	전화번호:
공동 연구원 이름:	전화번호:

## 동 의 서

-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
-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해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 4. 나는 인터뷰의 내용이 녹취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5.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u></u>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0 1 1 22 2 1 2 0 0	, 0	
연구 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 〈부록 3〉 FGI 반구조화 질문지

# 질적 면접 인터뷰 질문지

(쉼터 거주여성 대상)

# 1. 귀하는 가정폭력을 경험하였습니까?

- 최초의 폭력사건
- 최후의 폭력사건(탈폭력의 과정)
- 가장 심각했던 폭력사건
- 가장 전형적인 폭력사건

# 2. 인구사회학적 특성

- 연령, 학력, 직업(본인 & 배우자), 입소 전 경제적 상황
- 가족구성, 자녀연령, 쉼터에 자녀동반 여부
- 쉼터 거주기간
- 현재 거주 중인 쉼터의 지역 및 규모
- 퇴소 이후 거주 계획

## 3. 결혼 전·후에 걸쳐 어떠한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 생애주기와 관련하여 취업/비취업의 경험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 결혼과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취업의 경험이 변화하였나요?
- 이러한 취업경험에 만족하시나요?
- 취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나요?

## 4. 현재 쉼터에서의 생활

- 쉼터에서 이용 중인 프로그램: 이용 중인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답변 후 필요하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 질문(직업훈련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에 대한 질문)

-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 과정: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소개받고, 어떻게 선택하고, 언제부터 어디로 가서 어떤 식으로 참여했는지?
- 프로그램 만족도: 만족스러웠던 이유 & 불만족스러웠던 이유
- 프로그램 개선 방안,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바
- 쉼터 이용 중 취업경험: 어떻게 취업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취업희망이 있었으나 하지 못한 경우) 왜 취업할 수 없었는지? 등
- 퇴소 이후 경제적 자립 계획 및 예상되는 문제
- 퇴소 이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

-----

# 질적 면접 인터뷰 질문지

(쉼터 퇴소자 대상)

## 1. 참여자의 기본정보

- 연령, 자녀 여부, 자녀의 연령/동거 여부
- (어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돌봄의 형태
- 입소 전 폭력 상황
- 입소했던 쉼터의 지역 및 규모
- 쉼터 거주기간, 이용 프로그램
- 쉼터에서 직업훈련 이용 여부
- 쉼터에서 직업훈련 외 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 2. 현재 경제적 상황

- 현재 노동직위, 경제상황, 거주, 동거가족 등
- 현재 취업(또는 기타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욕구는?
- 쉼터 입소 전-퇴소 이후의 노동지위의 변화(직업훈련의 취업 연계/성공 여부)

-	쉼터	퇴소	이후	쉼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지?	있다면	해당	프로그
	래에	대하	소개	및 頭7	<b>1</b> -9						

- 3. 쉼터 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프로 그램에 대한 제안 및 평가도 포함)
- 도움이 된 점
- 부족한 점, 아쉬운 점
- 개선을 위한 제안

\_\_\_\_\_\_

# 질적 면접 인터뷰 질문지

(쉼터 종사자 대상)

## 1. 활동가의 기본정보

- 연령, 가폭영역/현재 기관에서 일한 기간, 본 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및 직책
- 현재 일하는 기관의 지역 및 규모
- 활동가 일을 하게 된 계기 및 과정
- 2. 쉼터 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 현황: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개괄적인 진행 방식
- 직업훈련
- 취업연계
- 주거지원
- 기타
- 3. 쉼터 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직업훈련 중심,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기관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확인)
-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의 현실적/일상적 어려움

# 194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복지 지원 방안 연구

- 직업훈련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한 인식
- 만족하는 점/불만족하는 점
- 지원의 양적/질적 커버리지에 대한 평가
- 서비스 전달자(street-level)로서의 고충
- 제도적 문제점 및 정책적 제안
- 지역자원 활용 현황, 한계
- 문제점

# 4.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분석

-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자 특성: 어떤 피해자가 주로 이용하는지? 이용하지 않거 나 못하는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인지? 프로그램 이용 효과가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 직업훈련과 관련한 갈등(이용자-활동가 간, 이용자-이용자 혹은 이용자-미이용자 간) 경험

# □ 저자 약력

- 남재욱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김봄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신나래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복지 지원 방안 연구

· 발행연월일 2019년 10월 07일 인쇄 2019년 10월 07일 발행

·발 행 인 나 영선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44)415-5000, 5100

팩 스: (044)415-5200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ISBN 979-11-339-7401-6 93330

· 인 쇄 처 (주)정인애드 (02)3486-6791